

종합감사

# 감사 보고서

-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

2024. 4.

교 육 부

감사결과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2
III. 감사결과(안) .....	4
1. 감사결과 총괄 .....	4
2. 처분 요구 사항 .....	6
(1) 수당 지급 부적정(시정·통보) .....	6
(2) 송무활동비 집행 부적정(권고·통보·<별도조치>통보) .....	12
(3) 법인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시정·주의) .....	20
(4) 사례금 등 기타소득세 未징수(시정·기관주의·통보) .....	24
(5) 사립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통보(시정완료)·경고) .....	30
(6)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제출 관련 지도·감독 소홀(기관경고·통보) .....	35
(7) 공익법인 관리 부적정(통보·주의) .....	43
(8) 소속 직원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부적정(징계·주의·시정·기관경고) .....	46
(9) 외부강의 미신고(주의·통보) .....	56
(10) 교원 휴가 사용 부적정 및 관리 감독 소홀(기관주의·통보) .....	62
(11)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기관경고·통보·주의) .....	74
(1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부적정(기관경고·통보) .....	79
(13)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주의·경고·시정) .....	86

(14)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경고·시정·<별도조치>통보·고발) ……	90
(15) 공립학교 자체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통보·시정·기관경고·기관주의) ……	94
(16) 공기질 특별점검 미실시(기관주의·통보) ……………	102
(17)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부적정(기관경고·통보) ……………	106
(18)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부적정(기관경고·기관주의·주의<별도조치>통보)	109
(19)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 미준수(기관주의·기관경고·<별도조치>통보) ·	114
(20) 교육감 표창 규정 미준수(기관주의·통보) ……………	118
(21) 수학여행 안전요원 성범죄 등 경력 조회 미실시(기관경고) …	123
<b>IV. 현지조치 사항</b> ……………	<b>126</b>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 4.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3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인사 및 복무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력지원, 입시 등 학사 관리, 재산 운용 및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0. 1월 ~ 2023. 4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3. 4. 10.부터 4. 21.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은 2023. 4. 21.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2023. 6. 9.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11. 15.(1차), 2023. 11. 22.(2차), 2023. 12. 13.(3차)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sup>1)</sup>

### 1. 주요 연혁

충청남도교육청은 1991년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로 심의·의결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제 집행기관인 충청남도교육감을 두어 2022년 7월 1일자로 18대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16대, 17대)하였다.

### 2. 기구 및 정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은 본청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로 조직체계이고 소속 기관은 14개 교육지원청, 13개 직속기관, 15개 도서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교원 17,436명을 포함하여 21,791명이다.

[표 1]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명)

합계	정무직	교육 전문직	교원(공립)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유	초등	중등	특수	비교과*	순회	소계			
21,791	1	353	864	7,439	6,660	1,015	1,302	156	17,436	3,981	4	16

### 3. 예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은 [표 2]와 같이 2022년 4,234,912백만원에서 2023년 4,944,266백만원으로 709,354백만원(16.8%) 증가하였다.

[표 2]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비고
세입	4,234,912	4,944,266	709,354	
세출	4,234,912	4,944,266	790,354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4. 학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은 [표 2]와 같이 유·초·중·고 등 1,239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257,064명이고, 교원 수는 21,075명, 교직원수는 2,772명이다.

학교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496	1	377	118	21,965	2,200	348
초등학교	421	1	419	1	115,875	8,539	1,246
중학교	186	1	143	42	59,574	4,682	510
고등학교	118	1	81	36	57,343	5,199	575
특수학교	10	0	8	2	1,340	406	76
방송통신중	2	0	2	0	267	46	2
방송통신고	2	0	2	0	592	51	2
고등기술학교	1	0	0	1	73	10	4
각종학교	3	0	2	1	35	39	9
합계	1,239	4	1,034	201	257,064	21,075	2,772

※ 학교 수는 분교를 포함, 교원 및 직원 수 사립학교 포함

### Ⅲ. 감사결과(안)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충청남도 교육청	-	1명 (1건)	5명 (5건)	59명 (60건)	65명 (66건)	· 기관경고 9건 · 기관주의 8건 · 통보 14건 · 통보(시정완료) 1건 · 권고 1건  【합계 33건】	· 시정(회수) 6건, 72,152,180원 · 시정(전출) 1건, 37,864,300원  【합계 7건】	· 통보 4건 · 고발 1건  【합계 5건】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 신분상 조치 경합 시에는 상위 조치로 함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재정 운용 책무성 제고 (부적정 집행액 회수, 72백만원)
  - 오지급 및 부적정 지급된 명절휴가비(12명, 19백만원), 원로교사수당(8명, 1백만원), 교직수당(7명, 4백만원), 교통비(2명, 1.1백만원) 등 총 25백만원 회수
  - 과지급된 미시공 공사비(7건, 27백만원), 안전관리비(2건, 1.6백만원), 미증빙(3건, 17백만원) 회수
  - 보조금 지원 기관(☞☞, 40백만원)에서 집행한 내역 중 소득세 미징수액(☞☞비, 79명, 1.5백만원) 회수
- (지방)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경징계 등)
  -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외 경조사 참석을 처리, 경징계
    -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교원(22명), 주의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 적정화 (고발 등)
  -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 지급받은 업체 대표\*(3명) 고발(사기혐의)
    - \* ☞☞대표 V, ☞☞대표 AB, ☞☞대표 AC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공무국외여행 등 자체 규칙 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외 경조사 참석을 처리한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 2. 처분 요구 사항 : 21건[붙임 참조]

**교 육 부****시정·통보**

제 목 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교육지원청 ③ ㉠㉢초등학교 등 24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를 근거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가산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나. 파견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관련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내파견 교육공무원에게 교직수당 가산금<sup>2)</sup> 2)부터 10)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가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원로교사수당 지급 관련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는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현행 법령 및 규정들에 따라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전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 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등 9개교는 【별표 1】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0. 10.부터 2022. 9.까지 설날 및 추석날 강등,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교직원 12명에게 명절휴가비 합계 18,736,080원을 지급하였고,

## 나. 파견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관련

㉠㉢유치원 등 7개교는 【별표 2】 “국내파견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가산금

2) 교직수당 가산금 1(이하 “원로교사수당”), 2(이하 “보직교사수당”), 3(이하 “특별교육수당”), 4(이하 “담임업무수당”), 5(이하 “실과담당수당”), 6(이하 “보건교사수당”), 7(이하 “병설유치원겸임수당”), 8(이하 “영양교사수당”), 9(이하 “사서교사수당”), 10(이하 “상담교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3. 3.까지 충청남도교육청 등에 파견된 교원 7명에게 담임업무수당, 영양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등 교직수당 가산금 합계 3,9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 다. 원로교사수당 지급 관련

㉠㉡고등학교 등 8개교는 【별표 3】 “원로교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2. 9.부터 2023. 3.까지 교사 또는 수석교사가 아닌 교감 8명에게 원로교사수당 합계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동 사안의 원인은 수당 지급 후 급여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 간 인사발령 등 신분변동 사항에 대한 연계 부족 및 일부 담당자의 급여 관련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인사 담당자들과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여 향후 수당 착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과다 지급된 수당 합계 23,976,08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고 (시정)
- ②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향후 동일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번	지급 기관명	지급 대상					명절일자	오지급액
		소속	직급	성명	구분	휴직(징계)기간		
1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A	질병휴직	'22.9.2.~'22.12.31.	'22.9.10. (추석)	1,025,760
2	⊙⊙초등학교	⊙⊙초등학교	-	-	강등 (3월)	'22.1.19.~'22.4.18.	'22.2.1. (설)	2,301,120
			-	-	강등 (3월)	'22.1.19.~'22.4.18.	'22.2.1. (설)	1,372,260
3	-	-	-	-	육아휴직	'22.1.30.~현재	'22.2.1. (설)	1,623,060
4	-	-	-	-	질병휴직	'20.9.28.~'20.11.18. (면직)	'20.10.1. (추석)	1,458,780
			-	-	육아휴직	'21.2.1.~'22.2.28.	'21.2.12. (설)	1,473,600
5	-	-	-	-	직위해제	'21.3.9.~'21.9.23.	'21.9.21. (추석)	1,064,160
6	-	-	-	-	육아휴직	'20.9.18.~'22.2.28.	'20.10.1. (추석)	1,397,640
7	-	-	-	-	육아휴직	'22.1.24.~현재	'22.2.1. (설)	1,560,240
8	-	-	-	-	육아휴직	'22.1.30.~'23.2.28.	'22.2.1. (설)	1,879,440
9	-	-	-	-	육아휴직	'22.1.26.~'23.3.1.	'22.2.1. (설)	1,879,440
10	-	-	-	-	육아휴직	'20.9.12.~'21.6.30.	'20.10.1. (추석)	1,700,580
<b>합계</b>								<b>18,736,080</b>

**【별표 2】**

**국내파견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번	파견자			파견내용		수당내역	
	원소속기관	직급	성명	파견기간	파견기관	수당명	오지금액 (지급내역)
1	○Ⓜ유치원	-	B	2019.3.1.~ 2021.2.28.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2,210,000 (월130,000원×17개월)
2	-	-	-	2022.3.1.~ 2024.2.29.	-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130,000 (월130,000원×1개월)
3	-	-	-	2023.3.1.~ 2024.2.29.	-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130,000 (월130,000원×1개월) ※ '23.4월 환수
4	-	-	-	2020.3.1.~ 2021.2.28.	-	교직수당 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360,000 (월30,000원×12개월)
5	-	-	-	2021.9.1.~ 2022.2.28.	-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780,000 (월130,000원×6개월)
6	-	-	-	2022.3.1.~ 2022.8.31.	-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130,000 (월130,000원×1개월)
7	-	-	-	2023.3.1.~ 2023.8.31.	-	교직수당 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130,000 (월130,000원×1개월)
						교직수당 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70,000 (월70,000원×1개월)
<b>합 계</b>							<b>3,940,000</b>

**【별표 3】**

**원로교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	성명	승진발령일	오지급 기간	오지급액 (지급내역)	비고
1	-	-	C	2020.2.29.	2020.3.	50,000 (월50,000원×1개월)	4호특별승진 (명예퇴직)
2	㉠㉡ 고등학교	-	-	2023.3.1.	2023.3.	50,000 (월50,000원×1개월)	
3	-	-	-	2022.9.1.	2022.9.~2023.3.	350,000 (월50,000원×7개월)	
4	-	-	-	2022.9.1.	2022.9.~2023.3.	350,000 (월50,000원×7개월)	
5	-	-	-	2022.9.1.	2022.9.~2023.3.	350,000 (월50,000원×7개월)	
6	-	-	-	2023.3.1.	2023.3.	50,000 (월50,000원×1개월)	
7	-	-	-	2023.3.1.	2023.3.	50,000 (월50,000원×1개월)	
8	-	-	-	2023.3.1.	2023.3.	50,000 (월50,000원×1개월)	
<b>합계</b>						<b>1,300,000</b>	

# 교 육 부

## 통보·권고·<별도조치>통보

제 목 송무활동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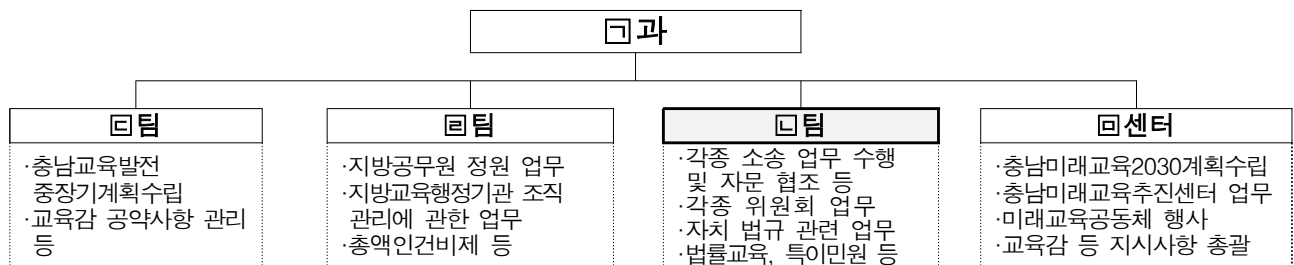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 월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 □과 소속 □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제18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소송 및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지명)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송무활동비와 함께 특정업무(법무담당)경비를 매달 정액(6급 이하 6만원, 과장은 8만원)으로 수령하고 있다.

[그림] 충청남도교육청 □과 소속팀별 업무 개요



[표 1] 충청남도교육청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

연번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액	비고
1	감사	· 도교육청 감사관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이하)	100,000 80,000	
2	학생배치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 담당공무원(과장이하)	100,000	
3	예산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과장이하)	150,000	
4	평생교육 (학원)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5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6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 및 담당	· 도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 담당과장 · 도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7	회계담당 공무원	· 도교육청 복식부기, 시·도교육청 회계·계약 담당과장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8	여론·동향	· 도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과장이하)	100,000	
9	법무담당	· 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 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20.~감사일 현재,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동일)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세목 210-01)”는 “일반수용비”, “각종수수료”, “교육경비” 등 3종류의 원가통계목<sup>3)</sup>으로 집행하도록 설정

3) 「지방회계법」에 따라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통계비목으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

되어 있다. 설정된 원가통계목상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소규모 수선비, 간행물 등 구입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대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종수수료”는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대외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로연수비를 의미한다.

또한, 동 기준 및 지침 등에 따르면 “운영수당(세목 210-06)”은 “위원회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강사수당”, “기타운영수당” 등 5개의 원가통계목으로 집행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설정된 원가통계목상 “위원회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의미하며, “일숙직비”는 일직 또는 숙직비를 의미한다. “시험관리비”는 출제·심사수당 등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의미하고, “강사수당”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 등에서 강의한 강사를 위한 외래강사료,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경비를 의미하며, 그 외 전술한 “위원회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강사수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은 “기타 운영수당”으로 설정되어 있다.

## 나. 송무활동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1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송”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 행정,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하고,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하고,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4) 1996. 3. 제정, 1996. 4. 8. 공포하여 시행 중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하며, “소송수행자 등”은 상기 소송수행자·소송 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마다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을 제외하고 주무과의 팀장 또는 담당자(담당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 연구사)를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되, 법무담당 직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답변서·이유서·준비 서면·증거서류 등의 제출,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과 소송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변론기일예의 출석·입회 및 보고, 선고기일예의 출석·입회 및 보고,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특정업무경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5조제2항 **【별표 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 정액지급되는 경비로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과반이상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또는 팀)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특정업무 상호간에는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세목은 “특정업무경비(250-03)”으로, 원가통계목명은 “특정업무경비”로 설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충청남도교육청 □팀 업무와 “특정업무경비·송무활동비”간 관계

특정업무경비	송무활동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팀 고유 업무로 수령</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① 소송 :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업무 수행 및 자문 협조 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② 위원회 : 행정심판·교육규제완화·교육소청 심사·법제심의위원회 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③ 자치 법규 : 법제 심의, 공포, 발령 등 관련 업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④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 안건 처리, 행정심판 재결 사항 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⑤ 법률교육, 특이 민원 등 처리</div>	<p>▶ (요건)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로 지정(지명)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100,000원의 <u>송무활동비</u> 수령 가능</p> <p>▶ (충청남도교육청 운영현황) 타부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팀 직원만을 대상으로 월 100,000원 상당의 <u>송무활동비</u> 정액 지급</p>

따라서, 상기 가, 나, 다를 종합하여 볼 때 충청남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송무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적절한 세출예산과목인 “운영수당(세목 210-06)”내 “기타운영수당” 원가 통계목으로 집행하고, 각 소송건별로 지정(지명)된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급별로 1건당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 하였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동안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교육청의 송무활동비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가. 송무활동비 집행 비목 부적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자체 규칙에 따라 지정

(지명)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송무활동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운영수당(세목210-06)”내 “기타운영수당” 원가통계목으로 집행함이 타당한데, 충청남도교육청은 동 “송무활동비”를 “일반수용비(세목 210-01)”내 “각종수수료” 원가통계목으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 자체 규칙 취지에 반하여 집행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4명 이상, 법무담당 직원 2명 이상)에 대해 심급별로 한 건당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5,998,420원의 송무활동비를 법무담당 직원(16명)에게만 월 100,000원 상당의 정액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송무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실제 소송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관계기관 등 의견

##### 1) 송무활동비 집행 비목 부적정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사실관계를 수용하면서도 송무활동비는 “특정 업무경비(세목 250-03)”도 아니고, “수당 성격의 보수(세목 110-01)”도 아닌 바,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기준 “일반수용비(세목 210-01)”로 집행가능한 3종류의 원가통계목<sup>5)</sup> 중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수입료 및 자문료로 집행가능하다고 설정된 “각종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일반수용비(세목 210-01)”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답하였다.

##### 2)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 자체 규칙 취지에 반하여 집행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사실관계를 수용하면서도 □팀 직원 전원에게

5) 일반수용비(세목 210-01)는 ①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②각종수수료(광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③교육경비(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로연수비)의 원가통계목으로 설정

지급한 송무활동비는 1996. 4. 8.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청 □팀에서 소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소송자료 수집을 위한 이해관계자 면담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각 소송건별로 실제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해 왔으며, 향후 송무활동비의 지급 범위,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검토결과

### 1) 송무활동비 집행 비목 부적정

충청남도교육청은 송무활동비를 일반수용비(세목 210-01) 중 “각종수수료” 원가통계목에서 집행 가능한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세목 210-01)”의 원가통계목상 “각종수수료”는 광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대외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 2)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 자체 규칙 취지에 반하여 집행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7조, 제19조 제3항에 따라 “송무활동비”를 소송건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포함된 4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지명)된 공무원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100,000원을 지급했어야 타당한데, 충청남도교육청은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만 월 100,000원 상당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고 법무담당 공무원 외에는 송무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건별로 지정(지명)된 소송 수행 공무원에게 송무활동비를 지급하여 소송 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자 한 자체 규칙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이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동 활동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소송건별로 해당 공무원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송무활동비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절한 비목인 “운영수당”(세목 210-06)내 “기타운영수당” 원가통계목으로 집행하시고 **(통보)**
- ② 송무활동비의 지급 범위,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규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별도조치>

(지방교육재정과 통보)

# 교 육 부

## 시정·주의

제 목 법인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고등학교 등 10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를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규정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로 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비회계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표】 “학교법인 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20. 2.부터 2022. 8.까지 관내 10개 사립학교는 공익법인 세무신고 수수료,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사장실 환경개선비 등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총 25건, 합계 37,864,3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법인부담 경비의 교비회계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각종 비용 총 25건, 합계 37,864,30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조치하시고 (시정)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명세 별첨】

**【별첨】**

**관련자 명세**

연번	소속 (법인명)	직급/성명	근무기간	비고
1	㉠㉡고등학교 (-)	-/D	2020. 7.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2		-/-	2015. 7.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3	- (-)	-/-	2017. 9. 1. ~ 2021. 8. 31.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4		-/-	2015. 1.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5	- (-)	-/-	2021. 3. 1. ~ 2022. 2. 28.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6		-/-	2021. 1.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7	- (-)	-/-	2019. 9. 1. ~ 2021. 8. 31.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8		-/-	2021. 9.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9		-/-	2016. 1.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10	- (-)	-/-	2017. 9.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11		-/-	2015. 3. 1. ~2022. 12 .31.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 퇴직
12	- (-)	-/-	2017. 9. 1. ~ 2023. 2. 28.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13		-/-	2010. 7. 1. ~ 2022. 3. 31.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 퇴직
14		-/-	2022. 4.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15	- (-)	-/-	2021. 9.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16		-/-	2015. 7.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17	- (-)	-/-	2019. 3. 1. ~ 2023. 2. 28.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18		-/-	2018. 7. 1.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19	- (-)	-/-	2018. 9. 1. ~ 2022. 2. 28.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퇴직
20		-/-	2017. 7. 1. ~ 2022. 12. 31.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 퇴직
21	- (-)	-/-	2014. 3. 19. ~ 2022. 2. 28.	■ 교비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 <b>태안</b> 학원 이사(2022.3.1.~현재)
22		-/-	2019. 3. 7. ~ 현재	■ 교비회계 집행 업무 부적정

**【별표】**

**학교법인 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학교명 (법인명)	집행일자	지출건명	금액
1	㉠㉡고등학교 ( - )	2020.07.03.	공익법인 세무신고 수수료	550,000
2		2021.06.11.	공익법인 세무신고 수수료	550,000
3		2022.08.01.	현황측량대금	225,500
4		2022.08.09.	공익법인 세무신고 수수료	550,000
5		2022.08.24.	경계측량대금	3,322,000
			<b>소계</b>	<b>5,197,500</b>
6	- ( - )	2020.02.03.	토지 경계복원측량비 지출	2,721,400
7		2020.06.10.	재산가치 파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4,565,000
			<b>소계</b>	<b>7,286,400</b>
8	- ( - )	2021.08.18.	학교경계지적측량	667,700
9	- ( - )	2021.04.26.	기본재산 실태조사 증명 발급 수수료	12,000
10		2022.03.04.	이사장실 환경개선비	6,029,510
11		2022.04.25.	기본재산 실태조사 증명 발급 수수료	13,090
12		2022.05.25.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694,100
13		2022.07.14.	세무조정자료신고수수료	550,000
			<b>소계</b>	<b>7,298,700</b>
14	- ( - )	2021.08.27.	신축기숙사 소유권 보존등기 보수료	990,000
15		2021.08.27.	신축기숙사 소유권 보존등기 증지대	16,000
16		2022.10.31.	급식실 증축공사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383,900
			<b>소계</b>	<b>1,389,900</b>
17	- ( - )	2021.08.23.	공익법인세무신고 수수료	1,430,000
18		2022.07.04.	공익법인세무신고 수수료	1,320,000
			<b>소계</b>	<b>2,750,000</b>
19	- ( - )	2022,04.27.	지적 경계측량	4,108,500
20	- ( - )	2021.12.21.	고용산재 법인사업장 명의 인증서 발급비용	22,000
21		2022.02.07.	교육용재산 건물철거 멸실비용	6,057,000
22		2022.11.23.	고용산재 법인사업장 명의 인증서 발급비용	22,000
			<b>소계</b>	<b>6,101,000</b>
23	- ( - )	2022.02.09.	교육용기본재산 경계복원 측량 의뢰	540,100
24	- ( - )	2021.06.08.	교육용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1,945,900
25		2021.07.19.	교육용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578,600
			<b>소계</b>	<b>2,524,500</b>
<b>합계</b>				<b>37,864,300</b>

# 교 육 부

## 시정·기관주의·통보

제 목 사례금 등 기타소득세 未징수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체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르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각종 수당(강사료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021년~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교육청은 ㉠(이)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4억원\*(1억원×4회 : 2021.4.7./2021.10.19./2022.6.10./2022.10.20.)을 집행하면서 **【별표】** “사례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未이행 현황”과 같이 총 79명에게 지급한 사례금 등 합계 16,627,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463,140원(소득세 1,330,160원, 지방소득세 132,98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사기간에 ㉠과에서 1억원 이상 교부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집행 실적 점검

※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100개 지방보조사업에 1,740,400천원 지원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사례금 등 기타소득세 미징수 관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검토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세 합계 1,463,140원

(소득세 1,330,160원, 지방소득세 132,98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조치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적합하지 않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③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시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사례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未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연도	신청일	교부일	교부액	강사료 등 지급 내역				未징수 소득세 등		
							내역	지출일	채주	지출액	소득세	주민세	계
1	2021 ㄱ 운영	☐☐	2021	2021.4.2.	2021.4.7.	100,000,000	-	2021.5.30.	E	200,000	16,000	1,600	17,600
2							-	2021.5.30.	-	200,000	16,000	1,600	17,600
3							-	2021.5.28.	-	400,000	32,000	3,200	35,200
4							-	2021.5.28.	-	400,000	32,000	3,200	35,200
5							-	2021.5.28.	-	400,000	32,000	3,200	35,200
6							-	2021.5.28.	-	400,000	32,000	3,200	35,200
7							-	2021.5.28.	-	400,000	32,000	3,200	35,200
8	2021 ㄴ 운영	☐☐	2021	2021.10.15.	2021.10.19.	100,000,000	-	2021.11.22.	-	400,000	32,000	3,200	35,200
9							-	2021.11.22.	-	400,000	32,000	3,200	35,200
10							-	2021.11.22.	-	400,000	32,000	3,200	35,200
11							-	2021.11.22.	-	400,000	32,000	3,200	35,200
12							-	2021.11.22.	-	150,000	12,000	1,200	13,200
13							-	2021.11.22.	-	130,000	10,400	1,040	11,440
14							-	2021.11.22.	-	130,000	10,400	1,040	11,440
15							-	2021.11.22.	-	130,000	10,400	1,040	11,440
16							-	2021.11.22.	-	260,000	20,800	2,080	22,880
17							-	2021.11.22.	-	130,000	10,400	1,040	11,440
18							-	2021.11.22.	-	150,000	12,000	1,200	13,200
19							-	2021.11.16.	-	300,000	24,000	2,400	26,400
20							-	2021.11.16.	-	300,000	24,000	2,400	26,400
21							-	2021.11.16.	-	300,000	24,000	2,400	26,400
22	-	2021.11.16.	-	300,000	24,000	2,400	26,400						
23	2022학년도 ㄷ 운영	☐☐	2022	2022.6.9.	2022.6.10.	100,000,000	-	2022.9.17.	-	139,500	11,160	1,110	12,270
24							-	2022.9.17.	-	139,500	11,160	1,110	12,270
25							-	2022.9.17.	-	209,500	16,760	1,670	18,430

연번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연도	신청일	교부일	교부액	강사료 등 지급 내역				未징수 소득세 등		
							내역	지출일	채주	지출액	소득세	주민세	계
26							-	2022.9.17.	-	209,500	16,760	1,670	18,430
27							-	2022.9.17.	-	209,500	16,760	1,670	18,430
28							-	2022.9.17.	-	209,500	16,760	1,670	18,430
29							-	2022.9.19.	-	200,000	16,000	1,600	17,600
30							-	2022.9.19.	-	200,000	16,000	1,600	17,600
31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2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3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4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5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6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7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8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39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40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41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42							-	2022.9.19.	-	150,000	12,000	1,200	13,200
43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44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45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46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47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48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49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50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연번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연도	신청일	교부일	교부액	강사료 등 지급 내역				未징수 소득세 등		
							내역	지출일	채주	지출액	소득세	주민세	계
51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52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53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54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55							-	2022.9.24.	-	130,000	10,400	1,040	11,440
56							-	2022.9.24.	-	260,000	20,800	2,080	22,880
57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58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59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0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1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2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3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4							-	2022.9.27.	-	140,000	11,200	1,120	12,320
62	2022 르 운영	☐☐	2022	2022.10.17.	2022.10.20.	100,000,000	-	2022.11.6.	-	200,000	16,000	1,600	17,600
66							-	2022.11.6.	-	200,000	16,000	1,600	17,600
67							-	2022.11.4.	-	200,000	16,000	1,600	17,600
68							-	2022.11.4.	-	200,000	16,000	1,600	17,600
69							-	2022.11.4.	-	200,000	16,000	1,600	17,600
70							-	2022.11.4.	-	200,000	16,000	1,600	17,600
71							-	2022.11.4.	-	200,000	16,000	1,600	17,600
72							-	2022.11.5.	-	200,000	16,000	1,600	17,600
73							-	2022.11.5.	-	200,000	16,000	1,600	17,600
74							-	2022.11.5.	-	200,000	16,000	1,600	17,600
75							-	2022.11.5.	-	200,000	16,000	1,600	17,600
76							-	2022.11.5.	-	200,000	16,000	1,600	17,600
77							-	2022.11.9.	-	250,000	20,000	2,000	22,000
78							-	2022.11.9.	-	200,000	16,000	1,600	17,600
79	-	2022.11.9.	-	200,000	16,000	1,600	17,600						
합계						400,000,000			79명	16,627,000	1,330,160	132,980	1,463,140

# 교 육 부

## 통보(시정완료)·경고

제 목 사립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유치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 F(은)는 2008. 5.부터 2022. 11.까지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립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유치원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세출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5에 따르면 “교육비 수입”은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이 납부받은 금액으로 그 목적인 교육활동에만 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공제가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은 공제회가 부담하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학사 운영을 위해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유치원 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입 세출 회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 원장 F(은)는 2018. 10. 2. 유치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G의 영구치 탈락 관련 사건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급액 2,920,000원을 H(G의 부)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6. “원아 부상 향후 예상 치료비 지급의 건”을 통하여 17,080,000원을 지급하고자 내부결재하고, 2019년 10월 16일 사립유치원회계 “관리운영비-수용비”에서 【별표】 “세출예산 집행 현황”과 같이 합의금으로 17,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추후, 유치원 예산으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특정 원아의 사고 합의금을 집행했던 사항이 적절치 않음을 인지한 원장 F(은)는 2022. 2. 24. 본인의 자금으로 기집행했던 금액 17,080,500<sup>6)</sup>원을 “2019학년도 지출금 반환” 명목으로 세입(행정활동수입-잡수입)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유치원 원장 F(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유아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예산 사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무회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연수와 사립유치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유치원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6) 합의금 17,080,000원 + 이체수수료 500원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은 2022. 2. 24. 부적정하게 지급된 원아의 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액 17,080,000원을 전액 세입조치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통보(시정완료))**
- ② 전)㉢㉣유치원 원장이자 현)㉢㉣유치원 원장 F7)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7) 관련자 ㉢㉣유치원 원장 F(은)는 '22.11.30. 의원면직 후 '22.12.1.~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

【별첨】

관련자 명세

소속 (지역)	직위(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대유치원 (㉠㉡)	원장	F	'08.05.30. ~ '22.11.30.	■ '22.12.1.~ 현재, (㉠㉡) ☐대유치원 원장

**【별표】**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내용	채주	지출액	비고
2019.10.16.	졸업생 G 원아 부상치료비 지출	H	17,000,500	
2019.10.16.	졸업생 G 원아 부상치료비 지출	H	80,000	
합계			<b>17,080,500</b>	

※ 2022. 2. 24. 17,080,500원을 “2019 세출예산 잔액반환” 명목으로 세입처리

※ 지출액 17,080,500원 = 합의금 17,080,000원 + 이체수수료 500원

# 교 육 부

## 통보·기관경고

제 목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제출 관련 지도·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등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예산 및 결산을 규정한 기간 안에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관련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 감사 또는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회계 기본지침(2022)」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들이 회계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결산 수립 및 보고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은 예산 및 결산을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청(교육지원청)도 사립유치원의 예·결산이 미제출될 경우, 실지 감사 또는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립유치원 예·결산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지연 및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20년 회계연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관내 114개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법정 제출 기한보다 최장 372일까지 지연 제출하고, 그중 29개 사립유치원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보고에 관한 법령과 절차 등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립유치원에 예·결산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K-에듀파인과 함께 공문으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교육감은

①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고,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통보)**

②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제출 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에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관련 교육지원청 명세 별첨】**

**【별첨】**

관련 교육지원청 명세

연번	기관명	대상 사립유치원 수
1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49개
2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3개
3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3개
4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23개
5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10개
6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9개
7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3개
8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1개
9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4개
10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1개
11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5개
12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2개
13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유치원 1개

**【별표】**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지연 및 미제출 현황**

연번	지역명	유치원명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법정제출일			2020.2.24.	지연 일수	2021.5.31.	지연 일수	2021.2.23.	지연 일수	2022.5.31.	지연 일수	2022.2.23.	지연 일수	2023.5.31.	지연 일수	2023.2.23.	지연 일수
1	구미	개관	2020.3.10.	15	미제출		2021.5.11.	78	미제출		2022.3.3.	8			2023.3.31.	36
2	구미	-	2020.3.10.	1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022.3.4.	9			미제출	
3	구미	-	2020.3.17.	22	미제출		2021.2.24.	1	미제출		2022.2.23.	0	2022.03.27.	0	미제출	
4	구미	-	2020.3.19.	24	미제출		2021.3.15.	21	미제출		2022.3.24.	29			미제출	
5	구미	-	2020.3.2.	7	미제출		2021.2.25.	2	미제출		2022.2.23.	0			2023.2.24.	1
6	구미	-	2020.3.5.	10	미제출		2021.2.25.	2	미제출		2022.3.2.	7			2023.3.30.	35
7	구미	-	2020.3.3.	8	2021.5.26.	0	2021.2.25.	2	2022.5.13.	0	2022.3.10.	15			미제출	
8	구미	-	2020.3.11.	16	2021.5.31.	0	2021.8.27.	185	2022.7.7.	37	2022.4.1.	37			2023.3.3.	8
9	구미	-	미제출		2021.6.21.	2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10	구미	-	2020.3.2.	7	2021.5.28.	0	2021.2.23.	0	2022.7.6.	36	2022.2.10.	0			미제출	
11	구미	-	2020.3.2.	7	2021.4.21.	0	2021.3.2.	7	2022.5.3.	0	2022.2.23.	0			2023.2.27.	4
12	구미	-	2020.3.2.	7	2021.5.31.	0	2021.3.2.	7	2022.5.16.	0	2022.3.23.	28			2023.4.3.	39
13	구미	-	2020.3.20.	25	2021.6.1.	1	2021.8.11.	169	2022.5.4.	0	2022.2.23.	0			2023.3.17.	22
14	구미	-	2020.3.10.	15	2021.5.27.	0	2021.3.3.	8	2022.5.27.	0	2022.3.4.	9			2023.2.25.	2
15	구미	-	2020.3.2.	7	2021.6.1.	1	2021.2.25.	2	2022.5.23.	0	2022.3.4.	9			미제출	
16	구미	-	2020.3.9.	14	2021.5.31.	0	2021.2.25.	2	2022.6.2.	2	2022.2.24.	1			2023.2.25.	2
17	구미	-	2020.3.10.	15	2021.5.31.	0	2021.8.26.	184	2022.6.22.	22	2022.3.24.	29			미제출	
18	구미	-	2020.6.2.	99	2021.6.28.	28	미제출		2022.5.12.	0	2022.4.3.	39			미제출	
19	구미	-	2020.3.2.	7	2021.5.26.	0	2021.3.2.	7	2022.5.17.	0	2022.2.25.	2			2023.2.23.	0
20	구미	-	2020.2.28.	4	2021.4.26.	0	2021.8.27.	185	2022.5.9.	0	2022.3.8.	13			미제출	
21	구미	-	2020.3.2.	7	2021.6.1.	1	미제출		2022.5.30.	0	2022.2.25.	2			2023.2.24.	1
22	구미	-	2020.3.11.	13	2021.5.31.	0	2021.2.26.	3	2022.5.16.	0	2022.2.25.	2			2023.2.22.	0
23	구미	-	2020.2.28.	4	2021.5.21.	0	미제출		2022.6.2.	2	2022.2.21.	0			2023.2.24.	1
24	구미	-	2020.2.28.	4	2021.5.28.	0	2021.2.25.	2	2022.5.24.	0	2022.2.24.	1			2023.2.23.	0
25	구미	-	2020.3.2.	7	2021.5.28.	0	2021.2.25.	2	2022.5.27.	0	2022.2.24.	1	2023.4.7.	0	2023.2.15.	0
26	구미	-	2020.2.25.	1	2021.5.21.	0	2021.2.24.	1	2022.5.9.	0	2022.2.23.	0			2023.2.22.	0
27	구미	-	2020.2.25.	1	2021.5.28.	0	2021.2.25.	2	2022.4.8.	0	2022.3.2.	7	2023.4.11.	0	미제출	
28	구미	-	2020.3.13.	18	2021.5.31.	0	2021.8.23.	181	2022.6.7.	7	2022.3.28.	33			2023.4.11.	47
29	구미	-	2020.2.25.	1	2021.5.28.	0	2021.2.25.	2	2022.5.27.	0	2022.2.24.	1			2023.2.27.	4
30	구미	-	2020.3.12.	17	2021.6.1.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1	구미	-	2020.2.25.	1	2021.5.31.	0	2021.2.25.	2	2022.5.13.	0	2022.2.28.	5	2023.4.10.	0	2023.2.27.	4
32	구미	-	2020.2.25.	1	2021.5.28.	0	2021.2.24.	1	2022.5.27.	0	2022.2.23.	0			2023.2.23.	0
33	구미	-	2020.2.28.	4	2021.5.24.	0	2021.2.18.	0	2022.5.13.	0	2022.2.14.	0			2023.2.13.	0
34	구미	-	2020.2.28.	4	2021.6.28.	28	미제출		2022.4.20.	0	2022.4.20.	56			미제출	
35	구미	-	2020.3.12.	17	2021.4.26.	0	미제출		2022.7.7.	37	2022.3.10.	15	2023.4.11.	0	미제출	

연번	지역청	유치원명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법정제출일			2020.2.24.	지연 일수	2021.5.31.	지연 일수	2021.2.23.	지연 일수	2022.5.31.	지연 일수	2022.2.23.	지연 일수	2023.5.31.	지연 일수	2023.2.23.	지연 일수
36	㉠㉡	-	2020.2.25.	1	2021.5.31.	0	2021.2.25.	2	2022.5.27.	0	2022.2.25.	2			2023.2.24.	1
37	㉠㉡	-	2020.3.10.	15	2021.5.28.	0	2021.3.5.	10	2022.5.31.	0	2022.3.4.	9			2023.2.27.	4
38	㉠㉡	-	2020.3.16.	21	2021.5.28.	0	2021.2.25.	2	2022.5.10.	0	2022.2.25.	2	2023.4.10.	0	2023.2.23.	0
39	㉠㉡	-	2020.2.28.	4	2021.5.31.	0	미제출		2022.5.16.	0	2022.3.25.	30			2023.2.28.	5
40	㉠㉡	-	2020.3.27.	32	2021.5.28.	0	2021.5.28.	94	2022.5.11.	0	2022.3.31.	36			2023.4.12.	48
41	㉠㉡	-	2020.3.2.	7	2021.5.28.	0	2021.3.11.	16	2022.4.8.	0	미제출		2023.4.10.	0	2023.3.2.	7
42	㉠㉡	-	2020.2.20.	0	2021.4.12.	0	2021.2.25.	2	2022.4.25.	0	2022.2.8.	0			2023.2.21.	0
43	㉠㉡	-	2020.3.16.	21	2021.6.1.	1	미제출		2022.7.7.	38	2022.3.3.	8			2023.3.2.	7
44	㉠㉡	-	2020.3.16.	21	2021.4.23.	0	2021.2.24.	1	2022.7.7.	38	2022.3.10.	15			2023.2.23.	0
45	㉠㉡	-	2020.2.25.	1	2021.5.10.	0	2021.2.23.	0	2022.5.12.	0	2022.2.23.	0			2023.2.21.	0
46	㉠㉡	-	2020.3.9.	14	2021.5.28.	0	2021.2.25.	2	2022.5.11.	0	2022.2.25.	2			2023.2.22.	0
47	㉠㉡	-	2020.2.25.	1	2021.5.17.	0	2021.2.23.	0	2022.5.23.	0	2022.2.4.	0			2023.1.31.	0
48	㉠㉡	-	2020.3.9.	14	2021.5.31.	0	2021.2.25.	2	2022.5.31.	0	2022.2.23.	0			2023.2.3.	0
49	㉠㉡	-	2020.2.28.	4	2021.4.16.	0	2021.2.25.	2	2022.5.31.	0	2022.2.28.	5			2023.2.24.	0
계			48(1)		14(6)		45(10)		17(8)		36(3)				34(14)	
1	㉠㉢	궤궡	2020.2.25.	1	2021.5.25.	0	2021.2.17.	0	2022.5.27.	0	2022.2.24.	1			2023.2.21.	0
2	㉠㉢	-	2020.2.25.	1	2021.5.28.	0	2021.2.25.	1	2021.5.28.	0	2022.2.25.	2			2023.4.13.	49
3	㉠㉢	-	2020.2.25.	1	2021.5.27.	0	2021.2.25.	1	2022.5.26.	0	2022.2.23.	0	2023.3.21.	0	2023.3.1.휴 원	-
계			3(0)		0(0)		2(0)		0(0)		2(0)				1(0)	
1	㉠㉣	궤궡	2020.3.2.	7	2021.5.26.	0	2021.2.23.	0	2022.5.13.	0	2022.2.24.	1			2023.2.23.	0
2	㉠㉣	-	2020.3.2.	7	2021.4.6.	0	2021.2.22.	0	2022.5.19.	0	2022.2.23.	0			2023.2.17.	0
3	㉠㉣	-	2020.3.3.	8	2021.4.5.	0	2021.2.23.	0	2022.4.19.	0	2022.2.22.	0			2023.2.22.	0
계			3(0)		0(0)		0(0)		0(0)		1(0)				0(0)	
1	㉠㉤	궤궡	2020.2.14.	0	2021.4.26.	0	2021.2.1.	0	2022.4.8.	0	2022.2.21.	0			2023.2.24.	1
2	㉠㉤	-	2020.3.6.	11	2021.5.27.	0	2021.2.23.	0	2022.5.30.	0	2022.2.23.	0			2023.2.27.	4
3	㉠㉤	-	2020.7.7.	134	2021.6.1.	1	2022.3.2.	372	미제출		보완서류 미제출				미제출	
4	㉠㉤	-	2020.7.6.	133	2021.5.28.	0	2021.2.25.	2	2022.5.20.	0	2022.2.25.	2			2023.2.24.	1
5	㉠㉤	-	2020.7.6.	133	2021.5.31.	0	2021.3.5.	10	2022.4.8.	0	2022.2.25.	2			2023.2.27.	4
6	㉠㉤	-	2020.4.8.	44	2021.5.28.	0	2021.2.26.	3	2022.6.9.	9	2022.2.23.	0			2023.3.14.	19
7	㉠㉤	-	2020.2.27.	3	2021.5.21.	0	2021.2.23.	0	2022.5.16.	0	2022.3.3.	8			2023.3.6.	11
8	㉠㉤	-	2020.4.17.	53	2021.5.31.	0	2021.3.2.	7	2022.5.31.	0	2022.2.25.	2			2023.2.27.	4
9	㉠㉤	-	2020.4.17.	53	2021.5.31.	0	2021.3.2.	7	2022.5.31.	0	2022.2.25.	2			2023.2.27.	4
10	㉠㉤	-	2020.2.28.	4	2021.5.31.	0	2021.2.26.	3	2022.6.10.	10	2022.3.4.	9			2023.2.24.	1
11	㉠㉤	-	2020.2.27.	3	2021.5.28.	0	2021.2.24.	1	2022.5.31.	0	2022.3.22.	27			2023.2.20.	0
12	㉠㉤	-	2020.3.17.	22	2021.5.26.	0	2021.3.2.	7	2022.6.2.	2	2022.2.25.	2			2023.2.24.	1
13	㉠㉤	-	2020.2.24.	0	2021.5.27.	0	2021.2.23.	0	2022.5.25.	0	2022.2.22.	0			2023.2.24.	1
14	㉠㉤	-	2020.2.25.	1	2021.5.28.	0	2021.2.25.	2	2022.5.30.	0	2022.2.23.	0			2023.2.22.	0

연번	지역청	유치원명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법정제출일			2020.2.24.	지연 일수	2021.5.31.	지연 일수	2021.2.23.	지연 일수	2022.5.31.	지연 일수	2022.2.23.	지연 일수	2023.5.31.	지연 일수	2023.2.23.	지연 일수
15	☐☐	-	2020.5.6.	72	2021.5.28.	0	2021.3.10.	15	2022.6.13.	13	2022.2.28.	5			2023.3.2.	7
16	☐☐	-	2020.4.10.	46	2021.5.24.	0	2021.2.25.	2	2022.5.31.	0	2022.2.25.	2			2023.2.22.	0
17	☐☐	-	2020.2.25.	1	2021.5.26.	0	2021.2.25.	2	2022.5.27.	0	2022.2.28.	5			2023.2.27.	4
18	☐☐	-	2020.2.28.	4	2021.5.26.	0	2021.2.26.	3	2022.6.9.	9	2022.2.25.	2			2023.2.24.	1
19	☐☐	-	2020.2.26.	2	2021.5.27.	0	2021.3.2.	7	2022.5.30.	0	2022.2.25.	2			2023.3.3.	8
20	☐☐	-	2020.2.27.	3	2021.5.25.	0	2021.2.25.	2	2022.4.5.	0	2022.2.24.	1			2023.2.27.	4
21	☐☐	-	2020.4.9.	14	2021.5.27.	0	2021.2.26.	3	2022.5.31.	0	2022.2.24.	1			2023.2.24.	1
22	☐☐	-	2020.2.26.	2	2021.5.31.	0	2021.2.25.	2	2022.6.8.	8	2022.3.2.	7			2023.3.7.	12
23	☐☐	-	2020.5.8.	74	2021.5.31.	0	2021.3.9.	14	2022.6.8.	8	2022.2.25.	2			2023.2.27.	4
계			21(0)		1(0)		19(0)		8(1)		18(1)				20(1)	
1	☐☐	☐☐☐	2020.7.9.	136	2021.4.28.	0	2021.2.23.	0	2022.4.28.	0	2022.2.21.	0			2023.2.20.	0
2	☐☐	-	2020.7.6.	133	2021.4.8.	0	2021.2.23.	0	2022.4.21.	0	2022.2.23.	0	2023.4.5.	0	2023.2.20.	0
3	☐☐	-	2020.7.13.	140	2021.5.19.	0	2021.2.22.	0	2022.5.19.	0	2022.2.24.	1			2023.3.2.	7
4	☐☐	-	2020.2.21.	0	2021.4.11.	0	2021.2.25.	2	2022.4.11.	0	2022.2.23휴 원	-	-	-	-	-
5	☐☐	-	2020.3.5.	10	2021.4.8.	0	2021.2.23.	0	2022.4.8.	0	2022.2.23.	0	2023.4.7.	0	2023.2.10.	0
6	☐☐	-	2020.8.28.	186	2021.6.10.	10	2021.2.25.	2	2022.6.10.	10	2022.3.2.	7			미제출	
7	☐☐	-	2020.7.6.	133	2021.5.30.	0	2021.3.1.	6	2022.5.30.	0	2022.2.25.	2			2023.3.2.	7
8	☐☐	-	2020.7.6.	133	2021.5.23.	0	2021.2.26.	3	2022.5.23.	0	2022.2.28.	5			2023.3.2.	7
9	☐☐	-	2020.6.30.	127	2021.5.30.	0	2021.2.22.	0	2022.5.30.	0	2022.2.28.	5	2023.4.11.	0	2023.3.3.	8
10	☐☐	-	2020.7.1.	128	2021.6.2.	2	2021.2.26.	3	2022.6.2.	2	2022.3.4.	9			2023.3.2.	7
계			9(0)		2(0)		5(0)		2(0)		6(0)				6(1)	
1	☐☐	☐☐☐	2020.3.6.	11	2021.5.3.	0	미제출		2022.4.20.	0	2022.2.22.	0	2023.4.6.	0	2022.2.22.	0
2	☐☐	-	2020.3.6.	11	2021.5.11.	0	2021.2.25.	2	2022.4.18.	0	2022.2.22.	0	2023.4.5.	0	2023.2.24.	1
3	☐☐	-	2020.3.5.	10	2021.4.20.	0	2021.2.24.	1	2022.5.11.	0	2022.2.17.	0			2023.2.24.	1
4	☐☐	-	2020.3.11.	16	2021.5.4.	0	2021.2.24.	1	2022.5.11.	0	2022.3.8.	13			2023.2.25.	2
5	☐☐	-	2020.3.9.	14	2021.4.19.	0	2021.5.12.	78	2022.5.12.	0	2022.2.23.	0			2023.4.13.	49
6	☐☐	-	2020.3.9.	14	2021.5.20.	0	2021.2.26.	3	2022.5.26.	0	2022.2.22.	0			2023.2.22.	0
7	☐☐	-	2020.3.6.	11	2021.5.26.	0	2021.2.24.	1	2022.4.18.	0	2022.2.21.	0			2023.2.24.	0
8	☐☐	-	2020.3.3.	8	2021.4.19.	0	2021.2.26.	1	2022.4.11.	0	2022.2.18.	0	2023.4.11.	0	2023.4.12.	48
9	☐☐	-	2020.3.4.	9	2021.5.13.	0	2021.3.2.	7	2022.5.31.	0	2023.2.24.	1	2023.4.6.	0	2023.2.24.	1
계			9(0)		0(0)		9(1)		0(0)		2(0)				6(0)	
1	☐☐	☐☐☐	미제출		2021.4.20.	0	2021.2.24.	1	2022.5.26.	0	2022.2.24.	1	2023.4.10.	0	2023.2.20.	0
2	☐☐		2020.2.26.	2	2021.4.5.	0	2021.2.23.	0	2022.5.14.	0	2022.2.24.	1			2023.2.8.	0
3	☐☐		2020.2.25.	1	2021.4.23.	0	2021.2.23.	0	2022.4.19.	0	2022.2.23.	0			2023.3.2.	4
계			3(1)		0(0)		1(0)		0(0)		2(0)				1(0)	
1	☐☐	☐☐☐	2020.2.24.	0	2021.5.14.	0	2021.2.24.	1	2022.5.9.	0	2022.2.24.	1			2023.3.13.	18
계			0(0)		0(0)		1(0)		0(0)		1(0)				1(0)	
1	☐☐	☐☐☐	휴원		휴원		미제출		2022.4.11.	0	2022.2.18.	0			2023.2.24.	1

연번	지역청	유치원명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결산서		예산서 (본예산)	
법정제출일			2020.2.24.	지연 일수	2021.5.31.	지연 일수	2021.2.23.	지연 일수	2022.5.31.	지연 일수	2022.2.23.	지연 일수	2023.5.31.	지연 일수	2023.2.23.	지연 일수
2	☉☉	-	2020.2.24.	0	2021.5.12.	0	2021.2.24.	1	2022.5.9.	0	2022.2.11.	0			2023.2.16.	0
3	☉☉	-	2020.2.21.	0	미제출		2021.3.29. 폐원	-	-	-	-	-	-	-	-	-
4	☉☉	-	2020.2.24.	0	2021.5.27.	0	2021.2.26.	3	2022.5.10.	0	2022.2.21.	0			2023.2.24.	1
계			0(0)		1(1)		3(1)		0(0)		0(0)				2(0)	
1	☉☉	개과	2020.2.28.	4	2021.5.17.	0	2021.2.24.	1	2022.4.28.	0	2022.2.23.	0			2023.3.7.	12
계			1(0)		0(0)		1(0)		0(0)		0(0)				1(0)	
1	☉☉	개과	2020.2.26.	2	2021.5.25.	0	2021.2.24.	1	2022.4.7.	0	2022.2.25.	2			2023.2.16.	0
2	☉☉	-	2020.2.28.	4	2021.5.28.	0	2021.3.9.	14	2022.4.11.	0	2022.2.28.	5			2023.2.21.	0
3	☉☉	-	2020.3.2.	6	미제출		2021.2.4.	0	2022.4.15.	0	2022.2.23.	0			2023.2.21.	0
4	☉☉	-	2020.3.3.	7	2021.4.29.	0	2021.2.22.	0	2022.4.7.	0	2022.2.23.	0			2023.2.16.	0
5	☉☉	-	2020.3.13.	17	2021.5.26.	0	2021.2.25.	2	2022.5.23.	0	2022.4.6.	41			2023.2.21.	0
계			5(0)		1(1)		3(0)		0(0)		3(0)				0(0)	
1	☉☉	대과	2020.2.14.	0	2021.5.6.	0	2021.2.25.	2	2022.4.7.	0	2022.2.16.	0			2023.4.14.	50
2	☉☉	-	2020.3.5.	10	2021.5.28.	0	2021.2.24.	1	2022.5.26.	0	2022.2.24.	1			2023.3.3.	8
계			1(0)		0(0)		2(0)		0(0)		1(0)				2(0)	
1	☉☉	대과	2020.3.3.	8	2021.5.28.	0	2021.2.26.	3	2022.5.12.	0	2022.2.24.	1			2023.2.22.	0
계			1(0)		0(0)		1(0)		0(0)		1(0)				0(0)	
총계			104(2)		19(8)		92(12)		27(9)		73(4)				74(16)	

※ ( )는 미제출 유치원 수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제출기한은 2023.5.31.임

# 교 육 부

## 통보·주의

제 목	공익법인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지원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시 동 법인의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소득이 발생한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미달되게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지원청은 관내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익법인의 소득이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은 [표 3] “공익목적사업비 집행기준 미달

공익법인 현황”과 같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관내 4개 공익법인의 매 회계 연도 결산기준 목적사업비(장학금) 집행실적이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데도 2023. 4. 감사일 현재까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 공익목적사업비 집행기준 미달 공익법인 현황

(단위 : 천원, %)

지역	법인명	구분	목적사업	연도	기본재산	순수 운용 소득 (A)	목적 사업비 (B)	실적 (B/A*100)	관할 세무서 통보 여부
㉠㉡	내대장학회	재단	장학	2020	973,952	13,975	8,000	57.2	×
	내대장학회	재단	장학	2021	337,294	8,435	5,600	66.4	×
	내대장학회	재단	장학	2021	1,991,375	18,961	11,880	62.7	×
	내대장학회	재단	장학	2021	200,000	4,144	2,540	61.3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의무 사용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공익법인 지도·점검 시 감사 지적 사례 공유, 관할 주무관청의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비영리(공익) 법인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법인 목적사업비 집행 의무 비율이 미달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서 통보 사항을 강조하여 표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명세 별첨】

**【별첨】****관련자 명세**

연번	소속	직위(급)/성명	근무기간	비고
1	㉠㉡ 교육지원청	-/1	2020.1.1.~ 2020.12.31.	▪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팀장 으로서 관리 업무 소홀
2	㉠㉡ 교육지원청	-/-	2021.1.1.~ 2021.12.31.	▪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팀장 으로서 관리 업무 소홀
3	㉠㉡ 교육지원청	-/-	2020.1.1.~ 2021.6.30.	▪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소홀
4	㉠㉡ 교육지원청	-/-	2021.7.1.~ 2021.12.31.	▪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소홀

# 교 육 부

## 징계·주의·시정·기관경고

제 목 소속 직원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부적정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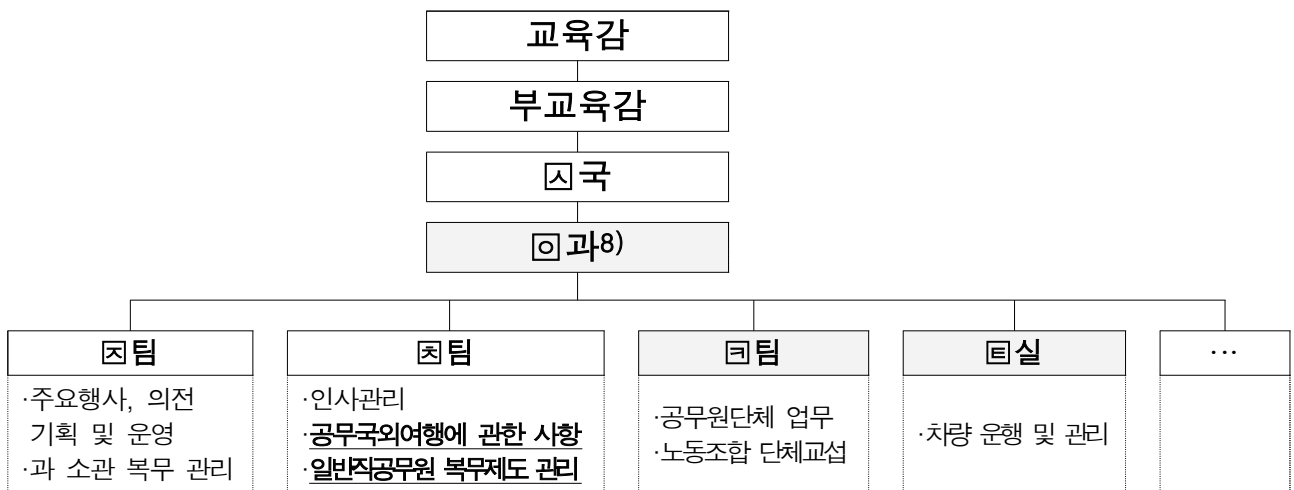
내 용

### 1. 업무개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VII. 출장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지의 출장을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공무국외여행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 인국 회과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출장, 휴가, 공무국외여행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표 4] 충청남도교육청 직제 현황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가. 지방공무원 국내외 출장 및 경조사 출장 관련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외 출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서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근무지내 출장과 12km 이상인 근무지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란에 출장조치 가능사례로 소속 직원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출장”과 “공무국외출장”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출장”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에서 소속 직원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에서 출장과 구분하여 정하면서 경조사 참석 가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나.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련하여, 행정안전부<sup>8)</sup>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동 예규에 따라 출장은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8) (회과 소속) ㉠팀, ㉡팀, ㉢팀, ㉣실, ㉤실, ㉥관, ㉦센터, ㉧, ㉨팀, ㉩실, ㉪팀

9) 충청남도교육청 회과(2023.05.10.)의 질의에 행정안전부 회과(2023.05.18.)에서 공문으로 회신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복무 조례」 및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외유성 해외여행 등을 방지하고자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작성례 (2019.12.)」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책무감을 보다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련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허가와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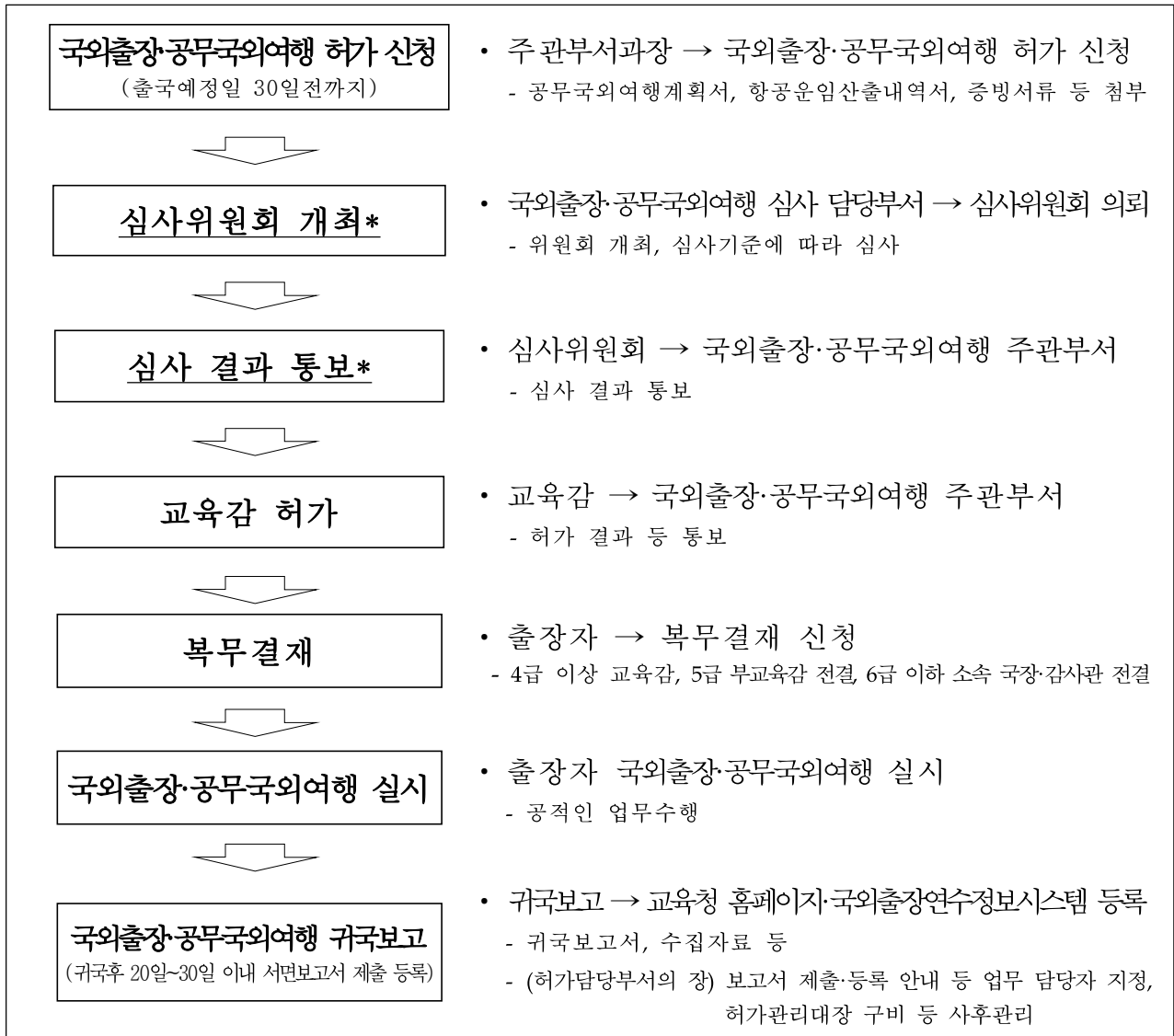
충청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과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여행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주관 부서장이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 하는 경우, 그 외에 교육감이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그 외에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심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외출장과 공무국외여행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이 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고, 복무결재 후 국외출장·공무국외 여행을 실시하고, 귀국후 2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sup>10)</sup>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5 참고)

한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 【별표 1】에 따르면 교육감의 권한 중 5급(5급상당 장학관 포함)의 국외출장에 대한 복무는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으로, 6급(장학사 포함) 이하의 국외출장에 대한 복무는 국장·감사관의 전결 사항으로 각각 위임되어 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10) 여행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귀국후 20일 이내,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귀국후 30일 이내 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 따른 허가는 별도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직급에 관계없이 교육감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표 5] 충청남도교육청(본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공무국외여행 절차 흐름도



\* 심사 대상일 경우에 한해 실시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종합하여 재구성

#### 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외 출장과 공무국외출장 비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은 “교육감의 허가” 사항이다. 근무지내외 출장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외출장의 경우 사안별 차이는 있으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출장 후 결과 보고의 경우 근무지내외 국내 출장은 구두로도 보고가 가능하나 국외출장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서면으로 귀국 후 20일 또는 30일 이내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무결재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 【별표 1】에 따르면 근무지내외 출장의 경우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면 되나, 국외출장의 경우 4급 이상은 교육감 결재를, 5급은 부교육감 결재를, 6급 이하는 국장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근무지내외 출장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라를 종합하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국외출장 후 20일이내 또는 30일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 귀국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동안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가. 국외출장 관련 절차 미준수

충청남도교육청은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J(와)과 K에 대해 동료 직원 L의 국외(口) 결혼식<sup>11)</sup>에 직장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 12. 10.(토)부터 2022. 12. 14.(수)까지 4박 5일간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외출장 시 출장 30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르면, 口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F-6-1) 발급용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결혼식, 가족사진, 교제 입증 서류 등)를 구비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상대 여성이 거주하는 口에서 결혼(출처 : 口대한민국총영사관 공지사항)

거쳐 교육감의 허가 신청부터, 심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하여 실시해야 하는 심사위원회 개최 및 통보, 출장 복귀 후 기한 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두 출장자는 국외출장 후 2022. 12. 22.에 출장경비 명목으로 교통비를 신청하여 항공료 등 총 1,139,960원(항공료: 출장자 2인 합계 1,038,000원 / 출장자 2인 국내교통비: 101,960원)을 수령하였으며, 기타 여비(숙박비, 일비, 식비)는 수령하지 않았다.

#### 나. 사무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복무결재 미준수

충청남도교육청은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충청남도교육훈령) 【별표 1】에 따라 J의 경우 부교육감까지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부서장인 ☐과장까지만 결재를 득하였고, K의 경우 국장(☐국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역시 부서장인 ☐과장까지만 결재를 득하였다. ☐과장 M(은)는 소속부서 직원의 복무와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결재 과정에서 결재 체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관계기관 등 의견

##### 1) 국외출장 관련 절차 미준수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관계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소속 직원인 L의 국외 경조사(결혼식)에 J(과)와 K(을)를 출장 처리한 것은 소속 직원의 국내 경조사에 기관대표 자격으로 2인 이내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 가능하다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의 사례를 국외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장처리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동 출장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국외출장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상 규정하고 있는 “허가”가 아닌 구두 보고 후 “출장

명령"에 의해서 처리하였다고 답하였다. 특히, 회과장 M(은)는 국외 경조사에도 기관대표로 소속 직원이 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당시 생각했고 경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외국은 안된다는 말은 찾아본 적 없으며 단순 경조사 대표로 다녀온 것인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회과장 M(은)는 동 출장을 단순 경조사 참석으로 보고, 보고서 제출이 행정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두 출장자의 출장비 정산 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 경조사로 인한 국외출장 선례가 없어 부서 여비 사정을 감안하여 왕복 교통비만 지급하였다고 답하며, 향후 확일적으로 국외 경조사 참석을 위한 소속 직원의 출장처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규정 정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사무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복무결재 미준수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관계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위임전결규정상 국외출장 복무결재를 득하지 못한 이유로 K(이)가 위임전결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J(을)를 동반 출장자로 선택하여 일괄 결재 상신하면서 소속 부서장인 회과장 M까지만 결재를 지정하여 발생한 실수였다고, J(은)는 동 사항을 당시에 알지 못했고 회과장 M(은)는 결재 시 미처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 나. 검토결과

#### 1) 국외출장 관련 절차 미준수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소속 직원의 국내 경조사에 기관대표 자격으로 2인 이내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 가능하다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의 사례를 국외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외 경조사 출장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 사무위임전결규정상으로는 국외출장으로 보면서도 국외출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상 국외출장으로는 보지 않는 이중적 해석으로 경조사 참석을 위한 직장대표 직원의

국외출장 처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출장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상 준수해야 하는 “허가” 및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국외출장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 제1조(목적)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상 “허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교육청은 임의로 “허가”가 아닌 “출장명령”으로 해석하고 국외출장 등 복무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회과장 M(은)는 선례가 없는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건을 처리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본인 생각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본인이 총괄하는 업무인 국외출장 등 복무 관리 업무 처리에도 소홀함이 보인다.

아울러, 출장자 2인이 출장 여비를 정산 신청하였을 때도 단순 경조사 참석은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행정행위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도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사무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복무결재 미준수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동 출장을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보면서도 위임전결규정상 결재를 득해야 하는 부교육감 및 회국장의 복무결재를 득하지 않았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복무결재권자의 결재 관련하여 회과장 M(은)는 J의 복무결재에 대해 N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답하였으나, N에 대한 추가 문답을 통해 국외출장 보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답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특히, 회과장 M(은)는 J(와)과 K의 출장 결재 시 일괄로 상신한 복무결재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본인이 최종 전결 처리하여 두 사람의 출장 결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J(와)과 K(은)는 회과 소속이나 직제 상 복무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소속팀은 아니므로 국외출장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회과장 M(은)는 부서에서 한두명이 가야겠다고 합의가 있었다고 답하면서 당시 기관대표로 소속 직원이 가는 것은 괜찮겠다고 생각했음을 답한 점을 볼 때 J(와)과 K(이)가 개인적으로 국외출장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비 정산 시 교통비만 정산하여 결과적으로 식비와 숙박비 등은 사비로 충당하게 된 점, 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5. 징계요구 양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동 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인 회과장 M(은)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처리 가능 여부 관련, 선례가 없음에도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이나 변호사 등의 자문 없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를 임의해석하여 국외 경조사 참석에 소속 직원의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외출장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 국외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상 국외출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이 아닌 본인의 생각에 근거하여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점, 부서 내 회의를 통해 출장자를 정한 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무결재를 올리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결재권자의 결재 관련하여 구두로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결재 체계에 있던 N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출장을

처리한 점, 국외출장 등 복무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출장자가 신청한 복무결재 체계가 제대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결 처리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정당한 국외출장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어야 했음에도 단순 경조사 참석으로 행정상 실익이 없다고 임의 판단해 의무 규정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출장경비를 정산하여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 ☐과장 M의 행위는 국외출장·공무 국외여행 및 복무 등을 총괄하는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타당하다.

다만, 소속 직원인 L(이)가 B(이)라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업무 부서장으로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을 추진했다고 답한 점, 두 출장자의 출장비 정산 시 교통비만 정산하고 식비와 숙박비는 출장자 사비로 충당하도록 처리한 점, 그리고 향후 획일적인 국외 경조사 참석을 위한 출장처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 정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경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6.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과장 M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고 (징계)
- ② J(와)과 K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시며, 정산받은 교통비는 회수 조치하시고 (주의, 시정)
- ③ 향후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당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교 육 부

## 주의·통보

제 목 외부강의 미신고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복무 및 출장비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을 제외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요청명세 등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를 제외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외부강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표】 “2020~2023년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교원 22명<sup>12)</sup>은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를 총 39회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외부강의 미신고자 2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시고 **(주의)**
- ② 관내 외부강의 미신고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교원 22명의 복무는 여비부지급 출장으로 처리함

**【별첨】**

관련자 명세

연번	소속(현)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㉞㉟고등학교	-	O	4일
2	-	-	-	1일
3	-	-	-	1일
4	-	-	-	5일
5	-	-	-	1일
6	-	-	-	1일
7	-	-	-	2일
8	-	-	-	1일
9	-	-	-	1일
10	-	-	-	1일
11	-	-	-	1일
12	-	-	-	5일
13	-	-	-	2일
14	-	-	-	1일
15	-	-	-	1일
16	-	-	-	1일
17	-	-	-	1일
18	-	-	-	2일
19	-	-	-	1일
20	-	-	-	1일
21	-	-	-	2일
22	-	-	-	3일

【별표】

2020년~2023년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현)	직위 (직급)	성명	강의기관	강의(과목)명	일시	시수	강의료	비고
1	㉞㉞고등학교	-	○	-	--- 지도	2022.1.10.(월)~1.12.(수) (10:00~18:00)	18	330	4일
	㉞㉞고등학교	-	○	-	--- 지도	2022.1.21.(금) (10:00~18:00)	6		
2	-	-	-	-	--- 연수	2022.5.28.(토) (10:00~12:00)	2	100	1일
3	-	-	-	-	--- 특강	2023.1.10.(화) (09:00~15:00)	6	300	1일
4	-	-	-	-	--- 지도	2022.1.8.(토) (09:00~18:00)	35	200	5일
	-	-	-	-	--- 지도	2022.1.12.(수) (09:00~18:00)			
	-	-	-	-	--- 지도	2022.1.13.(목) (09:00~18:00)			
	-	-	-	-	--- 지도	2022.1.14.(금) (09:00~18:00)			
	-	-	-	-	--- 지도	2022.1.15.(토) (09:00~18:00)			
5	-	-	-	-	--- 특강	2022.1.15.(토) (09:00~17:30)	8	300	1일
6	-	-	-	-	--- 특강	2022.6.16.(목) (14:00~16:00)	2	200	1일

연번	소속(현)	직위 (직급)	성명	강의기관	강의(과목)명	일시	시수	강의료	비고
7	-	-	-	-	--- 강사의뢰	2020.10.28.(수) (11:00~13:00)	2	300	2일
	-	-	-	-	--- 특강진행	2021.10.28.(목) (13:00~15:00)	2	300	
8	-	-	-	-	--- 연수	2022.5.28.(토) (13:00~15:00)	2	100	1일
9	-	-	-	-	--- 특강	2022.10.12.(수) (17:00~19:00)	1	150	1일
10	-	-	-	-	--- 특강	2022.1.14.(금) (10:00~14:00)	3	300	1일
11	-	-	-	-	--- 특강	2021.5.28.(목) (14:00~16:00)	2	250	1일
12	-	-	-	-	--- 특강	2020.6.19.(금) (11:30~13:00)	1	150	5일
	-	-	-	-	--- 특강	2021.1.12.(화) (09:00~12:00)	3	350	
	-	-	-	-	--- 특강	2021.1.14.(목) (09:00~12:00)	3	350	
	-	-	-	-	--- 동영상	2021.4.1.(목) (16:30~17:30)	2	300	
	-	-	-	-	--- 특강	2021.10.28.(목) (18:00~19:00)	1	100	
13	-	-	-	-	--- 합격을 위한 스킬	2022.12.22.(목) (15:00~20:00)	2	200	2일
	-	-	-	-	--- 합격을 위한 스킬	2022.12.29.(목) (15:00~20:00)	2	200	
14	-	-	-	-	--- 특강	2022.11.14.(월) (14:00~16:00)	2	150	1일

연번	소속(현)	직위 (직급)	성명	강의기관	강의(과목)명	일시	시수	강의료	비고
15	-	-	-	-	---특강 (---교육)	2021.11.18.(목) (18:30~20:30)	2	210	1일
16	-	-	-	-	--- 특강	2023.1.9.(화) (14:00~16:00)	2	200	1일
17	-	-	-	-	--- 특강	2022.11.25.(금) (18:00~21:00)	1	400	1일
18	-	-	-	-	--- 연수	2020.2.9.(일) (13:00~15:00)	2	300	2일
	-	-	-	-	--- 연수	2020.2.10.(월) (12:00~14:00)	2	300	
19	-	-	-	-	--- 특강	2021.1.19.(수) (13:00~17:00)	4	200	1일
20	-	-	-	-	특강 (---)	2022.11.23.(수) (13:00~16:40)	2	200	1일
21	-	-	-	-	--- 특강	2020.1.13.(월)~1.14.(화) (09:00~18:00)	2	100	2일
22	-	-	-	-	--- 이해	2021.6.29.(화) (11:00~12:00, 13:00~14:30)	2.5	400	3일
	-	-	-	-	--- 이해	2021.7.6.(화) (11:00~12:00, 13:00~14:30)	2.5	400	
	-	-	-	-	--- 이해	2021.7.20.(화) (11:00~12:00, 13:00~14:30)	2.5	400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관외 출장 제출자료 재구성 및 확인한 자료

# 교 육 부

## 기관주의·통보

제 목 교원 휴가 사용 부적정 및 관리 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㉞㉟고등학교 등 67개 기관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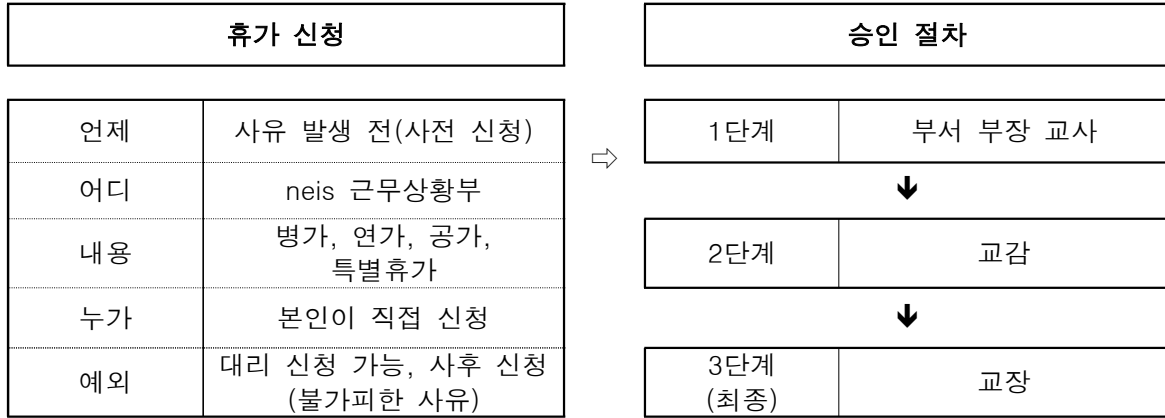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유·초등 및 중등 인사 실무<sup>13)</sup>”를 제작하여 관내 각급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는 이에 따라 교원 복무와 휴가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유·초등 및 중등 인사 실무”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교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받아야 하며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위 학교는 교원이 신청한 휴가에 대해 교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 부장 교사, 교감, 교장으로 최소 2~3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sup>14)</sup>. 충청남도교육청 단위학교 교원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그림]과 같다.

13)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실무]와 [중등 인사실무 매뉴얼]을 각각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14)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내 위임전결규정」에서 확인

[그림] 충청남도교육청 단위 학교 교원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주 : 승인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자료 : 2023 충청남도교육청 유·초·중등인사실무 매뉴얼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내 위임전결규정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표 6]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출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따르면 공가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라 정의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병역법」에 따른 훈련 참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 응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상황에 맞는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단위 학교 휴가 사용 승인권자는 신청한 휴가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경조사 휴가 및 공가 승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표 1】 “2020~2023년 경조사휴가 부적정 사용 현황”과 같이 교원 63명은 숙모상, 올케상<sup>15)</sup> 등 경조사 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였고, 단위 학교는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별표 2】 “2020~2023년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과 같이 교원 19명은 백부상, 외조모상 등 공가 사유가 아님에도 공가를 신청하고, 단위 학교는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원들이 특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본인보다는 동료 교직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할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sup>16)</sup>에서 경조사 휴가 대상과 일수의 혼돈으로 인해 규정 위반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복무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이 경조사 휴가의 대상과 공가의 사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교원 휴가를 신청하였으며, 더불어 휴가의 대리 신청과정에서도 대리자가 휴가의 종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의 종류를 잘못 신청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15)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은 연가 사용 대상임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은 1일이라고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변함이 없고, 단위 학교의 휴가 신청과 승인과정에서 최소 2~3번의 승인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휴가 사용을 승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관리자들이 신청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감사에 지적된 부적정한 휴가를 사용한 교원이 소속된 단위 학교에 주의를 촉구하시고 (기관주의)
- ② 앞으로 교원들이 현행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는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에 관한 교원 연수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첨】**

관련기관 명세

연번	기관명	사유	비고
1	㉮㉮고등학교	경조사	
2	-	경조사(2건)	
3	-	경조사 및 공가	
4	-	경조사(2건)	
5	-	경조사	
6	-	경조사(2건)	
7	-	경조사	
8	-	경조사	
9	-	경조사(2건)	
10	-	경조사 및 공가	
11	-	경조사	
12	-	경조사	
13	-	경조사	
14	-	경조사	
15	-	경조사(2건)	
16	-	경조사	
17	-	경조사	
18	-	경조사 및 공가	
19	-	경조사(2건)	
20	-	경조사	
21	-	경조사	
22	-	경조사	
23	-	경조사	
24	-	경조사(2건)	
25	-	경조사	
26	-	경조사	
27	-	경조사	
28	-	경조사	
29	-	경조사 및 공가	
30	-	경조사	
31	-	경조사	
32	-	경조사	

연번	기관명	사유	비고
33	-	경조사	
34	-	경조사	
35	-	경조사	
36	-	경조사	
37	-	경조사 및 공가	
38	-	경조사	
39	-	경조사	
40	-	경조사	
41	-	경조사	
42	-	경조사(2건)	
43	-	경조사	
44	-	경조사	
45	-	경조사	
46	-	경조사	
47	-	경조사	
48	-	경조사	
49	-	경조사(2건)	
50	-	경조사	
51	-	경조사	
52	-	경조사	
53	-	경조사	
54	-	경조사	
55	-	공가	
56	-	공가	
57	-	공가	
58	-	공가	
59	-	공가	
60	-	공가	
61	-	공가	
62	-	공가(2건)	
63	-	공가	
64	-	공가	
65	-	공가	
66	-	공가	
67	-	공가	

【별표 1】

2020~2023년 경조사휴가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1	☹☹고등학교	☹☹고등학교	-	P	2021. 3. 15. (15:20~16:30)	1시간 10분	작은어머니 상	
2	-	-	-	-	2021. 12. 10. (08:30~16:30)	1일	경조사	친이모사망
3	-	-	-	-	2021. 9. 13. (09:00~17:00)	1일	시매부(시누이 남편) 사망	
4	-	-	-	-	2020. 12. 1. (09:00~17:00)	1일	처 백부상	
5	-	-	-	-	2020. 7. 10. (08:30~14:30)	6시간	큰아버지 조문	
6	-	-	-	-	2022. 3. 4. (08:30~16:30)	1일	숙부 사망	
7	-	-	-	-	2022. 6. 21. (08:30~16:30)	1일	자형상	
8	-	-	-	-	2022. 5. 19. (09:40~17:40)	1일	백부상	
9	-	-	-	-	2022. 7. 8. (08:40~16:40)	1일	큰아버지 조문	
10	-	-	-	-	2021. 6. 1. (15:00~16:40)	1시간 40분	직계존속형제자매(이모)상	
11	-	-	-	-	2021. 3. 5. (14:30~16:30)	2시간	외삼촌 문상	
12	-	-	-	-	2022. 11. 25. (12:30~16:30)	4시간	큰어머니 상	
13	-	-	-	-	2020. 7. 27. (12:30~16:30)	4시간	고모상	
14	-	-	-	-	2020. 12. 4. (08:30~16:30)	1일	고모부 조문(삼오제)	
15	-	-	-	-	2022. 5. 3. (08:30~16:30)	1일	가족상	형부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16	-	-	-	-	2022. 6. 15. (08:30~16:30)	1일	가족상(형부)	
17	-	-	-	-	2021. 12. 17. (08:30~16:30)	1일	시숙부상	
18	-	-	-	-	2020. 5. 22. (08:40~16:40)	1일	매형 장례 참석	
19	-	-	-	-	2021. 10. 22. (08:30~16:30)	1일	백부사망	
20	-	-	-	-	2020. 10. 21. (08:30~16:30)	1일	가족(고모)상으로 인한 경조사휴가	
21	-	-	-	-	2020. 10. 21. (09:00~18:00)	1일	이모님 장례식 참여	
22	-	-	-	-	2021. 12. 31. (08:30~16:30)	1일	숙부상	
23	-	-	-	-	2020. 7. 2. (09:00~18:00)	1일	고모부상	
24	-	-	-	-	2022. 11. 28. (08:30~16:30)	1일	조사(고모)	
25	-	-	-	-	2021. 4. 16. (13:00~16:30)	3시간 30분	작은아버지 사망 장례 참석	
26	-	-	-	-	2022. 6. 3. (11:40~16:30)	4시간 50분	숙모님 별세	
27	-	-	-	-	2023. 3. 15. (11:00~16:30)	5시간 30분	숙부 장례식 참석	
28	-	-	-	-	2022. 5. 16. (08:40~16:40)	1일	제부상	
29	-	-	-	-	2022. 3. 21. (09:30~16:30)	7시간	숙부상	
30	-	-	-	-	2022. 4. 22. (13:00~16:40)	3시간 40분	숙모별세	
31	-	-	-	-	2022. 12. 9. (08:40~16:40)	1일	가족 상례	큰시아주머니의 배우자 사망
32	-	-	-	-	2020. 7. 29. (12:30~16:30)	4시간	큰아버지 영면	
33	-	-	-	-	2020. 7. 30. (08:30~16:30)	1일	숙부님 장례식 참석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34	-	-	-	-	2020. 3. 3. (09:00~18:00)	1일	고모님 별세	
35	-	-	-	-	2022. 12. 20. (08:30~16:30)	1일	숙부사망	
36	-	-	-	-	2021. 12. 23. (08:30~16:30)	1일	작은아버지 장례 참석	
37	-	-	-	-	2021. 3. 19. (12:00~16:30)	4시간 30분	숙모상	
38	-	-	-	-	2020. 2. 18. (09:00~17:00)	1일	친백부상	
39	-	-	-	-	2022. 9. 21. (08:40~16:40)	1일	백부상	
40	-	-	-	-	2023. 3. 22. (14:30~15:30)	1시간	작은아버지 별세	
41	-	-	-	-	2020. 6. 1. (08:30~16:30)	1일	형부상	
42	-	-	-	-	2020. 5. 26. (08:30~16:30)	1일	작은어머님 장례	
43	-	-	-	-	2020. 5. 25. (08:30~16:30)	1일	작은아버지 상	
44	-	-	-	-	2020. 11. 16. (14:00~16:30)	2시간 30분	숙부상	
45	-	-	-	-	2020. 10. 23. (08:20~16:20)	1일	매형 장례식 참석	
46	-	-	-	-	2023. 3. 21. (08:20~16:20)	1일	고모 작고	
47	-	-	-	-	2021. 12. 17. (10:40~16:20)	5시간 40분	경조사	외삼촌사망
48	-	-	-	-	2022. 4. 28. (14:40~16:40)	2시간	작은 아버지 장례식 참석	
49	-	-	-	-	2021. 4. 23. (08:30~16:30)	1일	백부상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50	-	-	-	-	2021. 6. 15. (08:30~16:30)	1일	올케상	
51	-	-	-	-	2022. 7. 12. (09:00~18:00)	1일	부모의 형제사망	
52	-	-	-	-	2021. 4. 12. (15:20~16:30)	1시간 10분	외숙모상	
53	-	-	-	-	2021. 5. 31. (08:30~16:30)	1일	백부상	
54	-	-	-	-	2020. 4. 13. (08:30~16:30)	1일	숙부 사상	
55	-	-	-	-	2022. 6. 29. (13:30~16:30)	4시간	백부상	
56	-	-	-	-	2022. 10. 25. (09:00~18:00)	1일	숙부상	파견(순회)
57	-	-	-	-	2021. 10. 27. (08:30~16:30)	1일	손윗동서 장례식장 발인 및 장지 동행	
58	-	-	-	-	2021. 12. 20. (08:20~16:20)	1일	이모망	
59	-	-	-	-	2021. 3. 3. (09:00~18:00)	1일	숙부 사망	
60	-	-	-	-	2022. 8. 19. (08:30~17:30)	1일	시숙부 사망	파견
61	-	-	-	-	2021. 9. 1. (13:30~16:30)	3시간	시이모상	
62	-	-	-	-	2021. 9. 24. (12:00~16:30)	4시간 30분	작은아버지 喪	
63	-	-	-	-	2023. 2. 21. (12:00~18:00)	6시간	가족상	배우자 형수사망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휴가사용 승인 현황 시스템 추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2020~2023학년도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1	㉞㉟중학교	㉞㉟중학교	-	Q	2021. 4. 6~4. 8. (08:30~16:30)	3일	외조모상	
2	-	-	-	-	2020. 9. 14. (08:30~16:30)	1일	아들 군입대	
3	-	-	-	-	2020. 3. 13. (13:30~16:30)	3시간	백부상가	
4	-	-	-	-	2020. 6. 26. (15:50~16:05)	15분	학교폭력 전담기구회의 다과 구입	
5	-	-	-	-	2020. 7. 16~7. 17. (08:30~16:30)	1일	처외조모상	
6	-	-	-	-	2021. 1. 4. (08:30~16:30)	1일	외조모상	
7	-	-	-	-	2020. 8. 20. (14:00~16:00)	2시간	세금신고	
8	-	-	-	-	2023. 2. 20~2. 21. (08:30~16:30)	1일	부친상	
9	-	-	-	-	2022. 9. 30. (12:40~16:40)	4시간	외조부상	
10	-	-	-	-	2022. 2. 14~2. 18. (08:20~16:20)	5일	신혼여행	
11	-	-	-	-	2020. 7. 3. (13:00~18:00)	5시간	주민자치회역량강화 교육참석	퇴직
12	-	-	-	-	2020. 5. 27. (10:30~16:30)	6시간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연번	소속(현)	기관명(당시)	직위(직급)	성명	일시	휴가 일수 (시간)	사유	비고
13	-	-	-	-	2020. 7. 6. (12:00~16:30)	4시간 30분	외조모상	
14	-	-	-	-	2021. 4. 9. (08:20~16:20)	1일	외조부상	
	-	-	-	-	2021. 4. 12. (08:20~16:20)	1일	외조부상	
15	-	-	-	-	2023. 3. 21. (08:40~16:40)	1일	(외)조모상	
16	-	-	-	-	2022. 6. 16.~6. 17. (08:40~16:40)	2일	축구대회 참가자인솔	-
17	-	-	-	-	2020. 5. 13. (08:30~16:30)	1일	형수님(별세)	
18	-	-	-	-	2021. 12. 3. (10:20~16:20)	6시간	귀가	연가를 신청했어야하는데 공가로 잘못 신청
19	-	-	-	-	2020. 12. 9. (15:20~16:00)	40분	크리스마스 쉼 판매금 송금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휴가사용 승인 현황 시스템 추출 자료 재구성

# 교 육 부

## 기관경고·통보·주의

제 목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신설학교 신설 공사 및 기존학교 증·개축 등 각급 학교 대상 시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제2절 및 제5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시·군·구는 5억원)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제4호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중 5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충청남도교육청 □□과)의 설계변경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가칭)○○초등학교 □□공사(최초 금액 9,959,913천원, 최종 금액 11,945,315천원, 19.9%증가, 공사기간 ‘19.6.10.~’20.9.7.)” 등 6건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적게는 10.2%에서 많게는 19.9%까지 증가하였음에도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과는 공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2016. 7. 1. 계약심사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한 이후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공사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시 거쳐야하는 정당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 처리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계약금액 10%이상 증가되는

시점에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계약심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5절 1-바-2)에 따르면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바, 지적된 6건은 신설학교의 개교에 맞춰 완공해야하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검토결과

그러나, 설계변경 계약심사대상 제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5절 2. 설계변경 심사의 절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계약심사 요청 후 심사대상 여부는 심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충청남도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담당부서(□□과)로 하여금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시고 (기관경고)
- ② 설계변경 계약심사의 실시 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통보)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명세 별첨】

**【별첨】**

관련자 명세

□ “주의” 처분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1	㉠㉡교육지원청	-	R	2019. 7. 1. ~ 202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li>▪ (현소속)본청 ㉠㉡과</li> </ul>
2	㉠㉡교육지원청	-	-	2022. 7. 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ul>
3	㉠㉡교육지원청	-	-	2019. 7. 1. ~ 2022.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li>▪ (현소속)본청 ㉠㉡</li> </ul>
4	㉠㉡교육지원청	-	-	2020. 7. 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ul>
5	㉠㉡교육지원청	-	-	2018. 7. 1. ~ 202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li>▪ (현소속)㉠㉡교육지원청</li> </ul>
6	㉠㉡교육지원청	-	-	2020. 7. 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li> </ul>

**【별표】**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자 (대표명)	
						당초 (1)	증액 (2)	변경 (%)		
1	㉠㉡	(가칭)㉠㉡초등학교 --공사	'19.05.30.	'19.06.10.	'20.09.07.	9,959,913	1,985,402	19.9	11,945,315	-
2	㉠㉡	(가칭)㉠㉡초등학교 --공사	'22.01.03.	'22.01.07.	'23.03.17.	13,322,521	1,948,075	14.6	15,270,596	-
3	㉠㉢	(가칭)㉠㉢초, ㉠㉢유 --공사	'20.11.25.	'20.12.01.	'22.02.20.	18,023,768	2,814,397	15.6	20,838,165	-
4	㉠㉢	(가칭)㉠㉢초, ㉠㉢유 --공사	'20.11.25.	'20.12.01.	'22.02.20.	2,794,037	389,952	14.0	3,183,989	-
5	㉠㉢	(가칭)㉠㉢초, ㉠㉢유 --공사	'20.11.25.	'20.12.01.	'22.02.20.	1,705,387	173,713	10.2	1,879,100	-
6	㉠㉣	(가칭)㉠㉣초등학교 --공사	'19.06.14.	'19.6.21.	'21.01.06.	11,516,461	1,709,584	14.8	13,226,045	-

# 교 육 부

## 기관경고·통보

제 목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2021. 11. 19.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 대상으로 “㉠㉡초등학교 ㉢공사” 등 7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22. 8. 18.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으로 “㉣㉤학교 ㉥공사” 등 33건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시공단계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각각의 대장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sup>17)</sup>에게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17)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sup>18)</sup>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를 받는 등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1】 “건설사업 산업재해 예방관리 현황”과 같이 “㉠㉡초등학교 ㉢공사(공사금액: 15,606,104천원, 공사기간 2022. 12. 23.~2024. 1. 26.)” 등 7건 공사에 대하여 2021. 12.부터 2023. 3.까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 2건 및 전문가 미확인 5건, 설계안전보건대장 미작성 2건 및 전문가 미확인 3건,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4건 및 전문가 미확인 3건 등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교육청 등은 건설공사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예정 부지 주변 도로, 지장물, 인접건물 현황 등을 고려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과 같이 “㉥㉦학교 ㉧공사(계약금액 372,016천원, 공사기간 2022. 12. 31.~2023. 2. 28.)” 등 33건 공사에 대하여 2022. 8.부터 2023. 3.까지 착공하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에게 공사현장의

---

18)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마다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 안전 조치 사항의 확인 및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개정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과정에서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같이 일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분기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과정운영, 안전점검 장비(드론 및 태블릿PC) 현대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앞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위하여 사업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확인,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 경고)**
- ② 위 감사결과 지적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관리가 미흡한 사업 7건과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사(완료된 공사 제외)는 규정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건설사업(50억원 이상) 산업재해 예방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사업명	설계용역		시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용역기간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금액	작성	검증	작성	검증	작성	검증
1	본청	㉠㉡초등학교 기공공사	'21.12.28.~'22.8.4.	1,093,534	'22.12.23.~'24.1.26.	15,606,104	○	×	○	×	○	×
2	㉠ ㉡	㉠㉡고등학교 -- 공사	'22.4.18.~'22.11.13.	790,758	'22.12.27.~'23.1.22.	6,866,409	×	-	×	-	×	-
3	㉠ ㉡	㉠㉡고등학교 --공사	'22.3.25.~'22.11.29.	348,377	'22.12.2.~'23.12.26.	5,097,520	○	×	○	×	×	-
4	㉠ ㉡	㉠㉡고등학교 --공사	'22.3.28.~'22.9.23.	435,369	'23.5.1.~'24.6.30.	6,165,520	○	×	○	○	×	-
5	㉠ ㉡	(가칭)㉠㉡중학교 및 ㉢㉣초등학교 --공사	'21.12.15.~'22.7.12.	1,879,257	'22.10.20.~'24.3.19.	29,666,714	○	×	○	×	○	×
6	㉠ ㉡	㉢㉣초등학교 --공사	'22.3.23.~'22.10.20.	445,039	'22.12.29.~'24.1.6.	7,292,466	○	×	○	○	○	×
7	㉢ ㉣	㉢㉣고등학교 --	'22.1.13.~'22.10.31.	207,883	'23.2.20.~'24.2.14.	6,372,223	×	-	×	-	×	-

**【별표 2】**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대표명)
1	○㉠	㉡㉢학교 ㉣㉤공사	372,016	2022.12.14.	2022.12.31.	2023.02.28.	-
2	○㉦	㉧㉨초등학교 --공사	135,156	2022.10.17.	2022.10.21.	2022.11.29.	-
3	○㉩	㉪㉫초등학교 --공사	115,716	2022.12.20.	2023.01.02.	2023.04.01.	-
4	○㉬	㉭㉮초등학교 --공사	120,608	2022.12.26.	2023.01.02.	2023.10.31.	-
5	○㉯	㉺㉻초등학교 --공사	161,751	2022.12.28.	2023.01.02.	2023.10.31.	-
6	○㉼	㉽㉾고등학교 --공사	109,533	2023.01.13.	2023.01.13.	2023.03.31.	-
7	○㉿	㊀㊁고등학교 --공사	445,234	2023.01.13.	2013.01.16.	2023.03.31.	-
8	○㊂	㊃㊄고등학교 --공사	258,448	2022.08.18.	2022.08.19.	2022.10.17.	-
9	○㊅	㊆㊇초등학교 --공사	127,118	2022.10.31.	2022.11.01.	2022.12.20.	-
10	○㊈	㊉㊊중학교 --공사	163,463	2022.11.02.	2022.11.07.	2023.02.10.	-
11	○㊋	㊌㊍고등학교 --공사	632,933	2022.11.08.	2022.11.30.	2023.03.17.	-
12	○㊎	㊏㊐초등학교 --공사	128,970	2022.12.20.	2022.12.23.	2023.01.31.	-
13	○㊑	㊒㊓초등학교 --공사	136,246	2022.12.20.	2022.12.23.	2023.03.02.	-

연번	관할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대표명)
14	○㉠	㉠㉡중학교--공사	114,431	2023.02.15.	2023.02.22.	2023.04.12.	-
15	○㉡	㉠㉡중학교 --공사	103,821	2022.11.03.	2022.11.08.	2023.01.06.	-
16	㉠㉢	㉠㉡초등학교 --공사	145,429	2022.08.09.	2022.08.22.	2022.10.20.	-
17	㉠㉣	㉠㉡초등학교 --공사	130,293	2022.12.11.	2022.12.20.	2023.02.27.	-
18	㉠㉤	㉠㉡초등학교 --공사	129,668	2022.12.14.	2022.12.22.	2023.07.19.	-
19	㉠㉥	㉠㉡고등학교 --공사	144,209	2022.12.15.	2022.12.20.	2023.02.02.	-
20	㉠㉦	㉠㉡고등학교 --공사	183,328	2022.12.15.	2022.12.20.	2023.02.27.	-
21	㉠㉧	㉠㉡중학교 --공사	133,452	2023.01.19.	2023.01.25.	2023.03.25.	-
22	㉠㉨	(가칭)㉠㉡센터 --공사	128,240	2023.02.22.	2023.03.02.	2024.02.28.	-
23	㉠㉩	(가칭)㉠㉡센터 --공사	674,178	2023.02.27.	2023.03.03.	2024.02.28.	-
24	㉠㉪	(가칭)㉠㉡센터 --공사	195,213	2023.03.08.	2023.03.10.	2024.02.28.	-
25	㉠㉫	㉠㉡고등학교 --공사	1,041,819	2023.03.17.	2023.03.24.	2023.10.19.	-
26	㉠㉬	㉠㉡고등학교 --공사	705,365	2023.03.20.	2023.03.24.	2023.10.19.	-
27	㉠㉭	㉠㉡고등학교 --공사	230,721	2023.03.20.	2023.03.24.	2023.10.19.	-
28	○㉮	㉠㉡초등학교 --공사	109,303	2022.08.11.	2022.08.18.	2022.10.26.	-

연 번	관할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대표명)
29	㉠㉡	㉢㉣초등학교 외 --공사	106,233	2022.11.15.	2022.11.16.	2022.12.20.	-
30	㉤㉥	㉦㉧고등학교 --공사	163,002	2022.12.07.	2022.12.12.	2023.02.28.	-
31	㉨㉩	㉪㉫고등학교 --공사	101,090	2022.12.14.	2022.12.16.	2023.02.28.	-
32	㉬㉭	㉮㉯고등학교 --공사	143,493	2022.12.14.	2022.12.16.	2023.02.28.	-
33	㉰㉱	㉲㉳중학교 --공사	124,190	2022.12.29.	2023.01.05.	2023.02.28.	-

# 교 육 부

## 시정·경고·주의

제 목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지원청 ② 충청남도ⓐⓒ교육지원청  
③ 충청남도ⓐⓒ교육지원청 ④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은 2021. 12. 30. 내사(대표 S)와 “(가칭)ⓐⓐ초등학교  
그공사”의 계약(계약금액 2,488,196천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23. 3. 15.  
준공 처리하는 등 ⓐⓑ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은 전체 7건의 공사에  
대하여 2020. 9.부터 2023. 3.까지 준공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에 적합  
하도록 감독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서류에  
의하여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가 시공되지 않는 등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감액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시설공사 미시공 현황”과 같이 “(가칭)㉢㉣초등학교 ㉤공사(계약금액 2,488,196천원, 공사기간 2022. 1. 3. ~ 2023. 3. 15.)” 등 7건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미시공(전선관 2,338M, 특고압케이블 116M, 파일 향타 101M) 하였는데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위 7건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공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 금액보다 26,947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설계용역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범위 중복 등에 따른 미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술직 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가칭)㉢㉣초등학교 ㉤공사” 등 7건 공사의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금액 26,947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주의)**

#### **【관련자 명세 별첨】**

**【별첨】**

관련자 명세

“경고” 처분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1	㉠㉡교육지원청	-	T	2021. 7. 1. ~ 현재	▪ ㉢㉣초 --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

“주의” 처분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1	㉠㉡교육지원청	-	U	2022. 1. 1. ~ 현재	▪ ㉢㉣초 --공사 준공검사 업무 소홀
2	㉠㉡교육지원청	-	-	2020. 7. 1. ~ 2023. 2. 28.	▪ ㉢㉣고 --공사감독 및 검사 업무 소홀 ▪ (현소속)㉠㉡교육지원청

※ 지적된 공사 중 미정산 금액이 3백만원 미만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제외

**【별표】**

**시설공사비 미시공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명)	내용	금액*
1	㉠ ㉡	(가칭)㉢ 초등학교 기공공사	2021.12.30	2022.1.3.	2023.3.15.	2,488,196	대산 (S)	합성수지 전선관 미시공 (전선관 1,361M)	18,004
2	㉠ ㉡	(가칭)㉢ 초등학교 --공사	2021.12.30.	2022.1.3.	2023.3.15.	16,715,121	- (-)	파일 향타 미시공 (파일 101M)	2,445
3	㉠ ㉡	㉢ 교육원 --공사	2019.9.2.	2019.9.9.	2020.9.14.	311,225	- (-)	특고압케이블 (CNCV등)미시공 (케이블 35M)	745
4	㉠ ㉡	(가칭)㉢고등학교 --설치 (관급자재)	2022.6.17.	2022.6.17.	2023.2.28.	378,231	- (-)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미시공 (전선관 977M)	3,379
5	㉠ ㉡	㉢초등학교 --공사	2021.5.7.	2021.5.10.	2021.12.2.	178,526	- (-)	특고압케이블 (CNCV등)미시공 (케이블 28M)	897
6	㉠ ㉡	㉢초등학교 --공사	2021.10.25	2021.10.28.	2021.12.23.	41,165	- (-)	특고압케이블 (CNCV등)미시공 (케이블 38M)	829
7	㉠ ㉡	㉢중학교 --공사	2022.7.7.	2022.7.13.	2022.8.22.	32,559	- (-)	특고압케이블 (CNCV등)미시공 (케이블 15M)	648
<b>합 계</b>							-	-	26,947

\*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 교 육 부

## 시정·경고·<별도조치>통보·고발

제 목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지원청 ②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은 2020. 2. 26. 내(대표 V)와 “ⓐⓑ중학교 ⓐⓑ부  
ⓐⓑ공사”의 계약(계약금액 687,913천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20. 10. 29.  
준공 처리하는 등 ⓐⓑ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은 3건의 공사를 2020. 10.부터  
2022. 9.까지 준공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  
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시설공사 법정 경비 미증빙 현황”과 같이 “㉢㉣중학교 ㉤㉥부 ㉦㉧공사(계약금액 687,913천원, 공사기간 2020. 3. 2. ~ 2020. 10. 29.)”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증빙자료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13,837천원)의 국세청 조회 결과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3건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공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제경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 금액보다 17,01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기준을 정립하고 정산 요령을 연수와 회의를 통해 안내하겠으며, 부적정 사용과 부당한 청구는 발견 즉시 감액 조정하거나 정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중학교 ㉤㉥부 ㉦㉧공사” 등 3건 공사의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17,017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관련자 명세 별첨】

##### <별도조치>

- ① (국세청 통보)
- ② (고발)

**【별첨】**

관련자 명세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1	㉠㉡교육지원청	-	Y	2019. 7. 1. ~ 202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부 ㉤㉥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li> <li>▪ (현소속) ㉠㉢교육지원청</li> </ul>
2	㉠㉡교육지원청	-	-	2021. 1. 1. ~ 2022.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li> <li>▪ (현소속) ㉠㉢교육지원청</li> </ul>
3	㉠㉢교육지원청	-	-	2022. 9. 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li> </ul>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증빙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 금액	구 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증빙 (회수액*)	공사업체 (대표자명)
1	(○⊙교육지원청) ⊖⊗중학교 □□부 기공공사 (‘20.3.2.~’20.10.29.) (‘20.2.26.)	687,913	계상금액	15,165	4,211 (5,498)	□대□ (V)
			지급금액	7,276		
			증빙금액	3,065		
			미증빙금액	4,211		
2	(○⊙교육지원청) ⊖⊗중학교 --공사 (‘21.5.24.~’21.8.11.) (‘21.5.14.)	474,321	계상금액	11,821	6,760 (7,777)	□대□ (AB)
			지급금액	6,760		
			증빙금액	-		
			미증빙금액	6,760		
3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공사 (‘22.8.4.~’22.9.5.) (‘22.8.4.)	188,429	계상금액	4,225	2,866 (3,742)	□대□ (AC)
			지급금액	2,866		
			증빙금액	-		
			미증빙금액	2,866		
합계		1,350,663	계상금액	31,211	13,837 (17,017)	-
			지급금액	16,902		
			증빙금액	3,065		
			미증빙금액	13,837		

\*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 교 육 부

## 통보(2)·시정·기관경고·기관주의

제 목 공립학교 자체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초등학교 등 4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물 개선과 학교 시설사업 수요를 충족하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 6. 27. 「공립학교 시설사업 전출금 교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출금 교부 기준을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학교 신청과 사업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 2천만원 초과도 교부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 자체 시설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설계용역대가 기준을 개선<sup>19)</sup>하고, 현장지도단 구성·담당자 연수 등을 개최하고, 학교 요청 시 시설 업무 컨설팅을 통해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 담당자 연수 및 지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자료 발췌)>

- '22년 교육지원청 계약업무 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연수('22. 2월, 7월, 12월 3회 236명 참석)
- '22년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연수 ('22. 6. ~ 7., 3회 850명 참석)
- '22년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학교장터(S2B) 연수('22. 5. 11. ~ 5. 13., 3회 599명 참석)
- 계약업무 매뉴얼 및 안내('22.6.), 소규모 학교공사 안내서 발간('23.1.)

이번 감사기간에는 [표 7]과 같이 시설사업 전출금으로 추진한 공립학교 자체

19) 종합수선, 단순수선 공사 효율 향상, 설계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설계 효율 100% 적용, 인테리어 리모델링 설계업무는 대가의 1.5배 적용 가능 등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sup>20)</sup>로 수의계약한 6개 학교 총 10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및 집행 실태를 확인하였다.

[표 7] 공립학교 자체 시설공사 점검 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자 (대표)	계약방법
1	(㉠㉠ ㉠㉠초등학교) ㉠㉠공사	30,569	'23.1.16.	'23.1.25.~'23.2.20.	내자 (W)	수의계약 (여성기업)
2	(㉠㉠ ㉠㉠초등학교) ㉠㉠공사	54,350	'23.1.26.	'23.1.30.~'23.2.24.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3	(㉠㉠ ㉠㉠중학교) ㉠㉠공사	27,070	'23.1.13.	'23.1.13.~'23.2.5.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4	(㉠㉠ ㉠㉠중학교) ㉠㉠공사	50,015	'23.1.27.	'23.2.1.~'23.2.28.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5	(㉠㉠ ㉠㉠초등학교) ㉠㉠공사	25,620	'22.11.3.	'22.11.3~'22.12.2.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6	(㉠㉠ ㉠㉠초등학교) ㉠㉠초 ㉠㉠공사	46,748	'22.11.23.	'22.11.23~'23.2.1.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7	(㉠㉠ ㉠㉠초등학교) ㉠㉠공사	27,838	'22.12.28.	'23.1.10.~'23.2.7.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8	(㉠㉠ ㉠㉠초등학교) ㉠㉠공사	46,096	'22.12.28.	'23.1.18.~'23.2.7.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9	(㉠㉠고등학교) ㉠㉠공사	54,115	'22.11.1.	'22.11.4.~'22.12.1.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10	(㉠㉠ ㉠㉠초등학교) ㉠㉠공사	50,000	'22.11.28.	'22.11.30.~'22.12.21.	내자 (-)	수의계약 (여성기업)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계약 현황 재구성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다만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과 계약시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가. 시설공사 분할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학교 내부 환경개선 등 공사 내용이 동일한 단일 사업은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시설공사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서류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 법정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라.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은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시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 ㉠㉠초등학교, ㉠㉠ ㉠㉠중학교에서 각각 추진한 2건의 공사는 [표 8]과 같이 실내 환경개선이라는 공사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한 시기도 유사함에도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들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87.745%의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어 약 19,854천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자체 시설공사 통합발주 시 차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통합발주			건설업
				예정금액	낙찰금액*	차액	
1	(㉠㉠ ㉠㉠초등학교) ㉠㉠공사	30,569	'23.1.16.	84,919	74,512	10,407	시설물유지관리업
2	(㉠㉠ ㉠㉠초등학교) ㉠㉠공사	54,350	"23.1.26.				실내건축공사업
3	(㉠㉠ ㉠㉠중학교) ㉠㉠공사	27,070	'23.1.13.	77,085	67,638	9,447	실내건축공사업
4	(㉠㉠ ㉠㉠중학교) ㉠㉠공사	50,015	'23.1.27.				실내건축공사업
계		162,004		162,004	142,150	19,85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른 87.745%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추정금액

## 나. 시설공사 검사 부적정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관할 ㉠㉡고등학교 등 3개 학교는 【별표】 “공립 학교 자체 시설공사 점검 결과”와 같이 “그공사(계약금액 54,115천원, 공사기간 2022. 11. 4. ~ 2022. 12. 1.)” 등 5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합계 216,119천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 다. 법정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등 2개 학교는 【별표】 “공립 학교 자체 시설공사 점검 결과”와 같이 “그공사(계약금액 46,096천원, 공사기간 2023. 1. 18. ~ 2023. 2. 7.)” 등 2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계 1,609천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 라.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는 【별표】 “공립학교 자체 시설공사 점검 결과”와 같이 “그공사(계약금액 27,070천원, 공사기간 2023. 1. 13. ~ 2023. 2. 5.)”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 3.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과 사례중심의 심화 연수를 추진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초등학교는 분할발주와 관련하여 “그공사”는 구조 변경 및 개선 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업체와 계약하였고 “그공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내용과 예산이 다르고 겨울방학 중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검토결과

그러나,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부를 위해 수립한 “㉠㉠운영비 교부 계획(22.12.2)”에는 휴게 공간 시설 설치, 리모델링, 집기 비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W)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체 조회 결과 건축물의 내부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사하는 “실내건축 공사업”와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 계약 시 제출한 면허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일 뿐 해당 공사는 실내건축 공사로 볼 수 있어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4.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앞으로 학교 자체 시설공사의 집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② “㉠㉠초등학교 ㉠㉠공사”, “㉠㉠초등학교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한 공사금액 1,609천원(제경비·부가세 별도)은 회수하시고 (시정)
- ③ ㉠㉠중학교의 “㉠㉠공사”와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적법한 하자보증서를 제출 받으시고 (통보)
- ④ 위 감사결과 지적된 4개 학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 【관련학교 명세 별첨】

**【별첨】**

관련학교 명세

□ “경고” 처분 학교 명단

연번	관할청	설립별	학교명	비고
1	㉠㉠교육지원청	공립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계약 업무 소홀</li> <li>▪ 기공사 준공검사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소홀</li> <li>▪ 기공사 준공검사 업무 소홀</li> </ul>
2	㉠㉡교육지원청	공립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계약 업무 소홀</li> <li>▪ 기공사 준공검사 및 하자보증서 업무 소홀</li> <li>▪ 기공사준공검사 및 하자보증서 업무 소홀</li> </ul>

□ “주의” 처분 학교 명단

연번	관할청	설립별	학교명	비고
1	㉠㉢교육지원청	공립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공사 준공검사 업무 소홀</li> </ul>
2	㉠㉣교육지원청	공립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 소홀</li> </ul>

**【별표】**

**공립학교 자체 시설공사 점검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준공 검사 실시	안전 관리 비 증빙	하자 보증서 제출	계약자 (대표명)	전출금 교부(승인)	
									일자	기관
1	○○○	(☞☞초등학교) 기비공사 (‘23.1.25.~‘23.2.20.) (‘23.1.16.)	수익 (여성기업)	30,569	×	×	○	-	‘22.12.2.	○○○ 교육지원청
2	○○○	(☞☞초등학교) 기사공사 (‘23.1.30.~‘23.2.24.) (‘23.1.26.)	수익 (여성기업)	54,350	×	○	○	-	‘22.12.9. ‘23.1.20.	○○○ 교육지원청
3	○○☞	(☞☞중학교) 기○공사 (‘23.1.13.~‘23.2.5.) (‘23.1.13.)	수익 (여성기업)	27,070	×	○	×	-	‘22.10.18.	○○☞ 교육지원청
4	○○☞	(☞☞중학교) 기즈공사 (‘23.2.1.~‘23.2.28.) (‘23.1.27.)	수익 (여성기업)	50,015	×	○	×	-	‘22.10.13. ‘22.10.31.	○○☞ 교육지원청
5	○○○	(☞☞초등학교) 기츠공사 (‘22.11.3~‘22.12.2.) (‘22.11.3.)	수익 (여성기업)	25,620	○	○	○	-	‘22.10.27.	○○○ 교육지원청
6	○○○	(☞☞초등학교) ☞☞초 기키공사 (‘22.11.23~‘23.2.1.) (‘22.11.23.)	수익 (여성기업)	46,748	○	○	○	-	‘22.10.5.	○○○ 교육지원청
7	○○☞	(☞☞초등학교) 기트공사 (‘23.1.10.~‘23.2.7.) (‘22.12.28.)	수익 (여성기업)	27,838	○	○	○	-	‘22.10.14.	○○☞ 교육지원청
8	○○☞	(☞☞초등학교) 기프공사 (‘23.1.18.~‘23.2.7.) (‘22.12.28.)	수익 (여성기업)	46,096	○	×	○	-	22.10.18.	○○☞ 교육지원청
9	○○☞	(○○☞고등학교) 기흥공사 (‘22.11.4.~‘22.12.1.) (‘22.11.1.)	수익 (여성기업)	54,115	×	○	○	-	‘22.9.30.	○○☞ 교육지원청
10	○○☞	(☞☞초등학교) 기기공사 (‘22.11.30.~‘22.12.21.) (‘22.11.28.)	수익 (여성기업)	50,000	○	○	○	-	‘22.11.1.	충청남도 교육청
계(해당부분)				412,421	216,119	1,609	77,085			

# 교 육 부

## 통보·기관주의

제 목 공기질 특별점검 미 실시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  
③ ㉢㉣고등학교 등 5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환경위생 관련 관리·점검 업무를 하고 있고, 관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등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보건법」 제2조의2 및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4의2 및 【별표】 6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오염공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기질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종료되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20. 1.부터 2023. 4.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시설 공사 현황 및 시설 공사 완료 후 공기질 측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교사 내 공기질 특별점검 미실시 현황”과 같이 ㉔㉕고등학교를 포함한 총 5개 학교 5건의 공사에서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교사 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교사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후 공기질 특별점검을 미실시한 학교를 2023. 4.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내 학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는 학교 공기질 측정·관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학교 시설 공사의 주체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공사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교육청 관내 학교의 시설공사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사 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5개 학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고 (통보)

② 앞으로 공기질 특별점검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별표】**

교사 내 공기질 특별점검 미 실시 현황

연번	지역	연도별	설립별	학교명	사업명	공사준공일
1	㉠㉡	2020	공립	㉢㉣고등학교	㉤공사	2020.10.23.
2	㉠㉢	2020	공립	㉣㉤유치원	㉥공사	2020.11.20.
3	㉠㉢	2021	공립	㉢㉣초등학교	㉥공사	2021.12.03.
4	㉢㉣	2021	공립	㉢㉣초등학교	㉥공사	2021.12.15.
5	㉠㉣	2022	공립	㉢㉣고등학교	㉥공사	2022.03.16.
5개교, 공사 5건						

# 교 육 부

## 기관경고·통보

제 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㉞㉞초등학교 등 7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관내 공·사립학교 872개교(연면적 5,168,532m<sup>2</sup>)\*의 감독기관으로서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 283개교(연면적 1,761,774m<sup>2</sup>, 석면면적 509,813m<sup>2</sup>)에 대하여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 공립 671개교(4,385,862m<sup>2</sup>), 사립 201개교(782,670m<sup>2</sup>) (2022년 기준 교육통계 자료)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석면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1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석면 등 환경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석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초등학교 등 7개교는 【별표】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미측정 현황”과 같이 석면건축물이 있음에도 2021. 9.부터 2023. 3.까지 연 2회 이상 석면농도가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측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학교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알 수 없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서간 협조를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해체·제거 현황 등을 확인하고 석면농도 측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앞으로 관내 학교 석면건축물은 석면농도 측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
- ②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7개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미측정 현황**

(단위 : m<sup>3</sup>)

연번	관할청	설립	급별	학교명	연면적	석면면적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직전 측정일	최근 측정일	직전 평가일	최근 평가일	평가 등급
1	㉠㉡	공립	초	㉢㉣초등학교	10,826	595	'21.9.27.	-	'22.7.12.	'23.2.9.	낮음
2	㉠㉡	공립	초	㉢㉣초등학교	4,776	215	'21.10.7.	-	'22.7.12.	'23.2.9.	낮음
3	㉠㉡	사립	중	㉢㉣중학교	3,593	114	'21.10.6.	-	'22.7.12.	'23.2.9.	낮음
4	㉠㉡	사립	유	㉢㉣유치원	648	66	'21.10.14.	-	'22.7.12.	'23.2.9.	낮음
5	㉠㉡	사립	유	㉢㉣유치원	461	240	'22.3.10.	-	'22.7.12.	'23.2.9.	낮음
6	㉠㉢	공립	중	㉢㉣중학교	8,766	66	'21.10.6.	-	'22.7.12.	'23.2.9.	낮음
7	㉠㉣	공립	초	㉢㉣초등학교	2,998	69	-	-	'22.7.12.	'22.12.29.	낮음

# 교 육 부

## 기관경고·기관주의·주의·<별도조치>통보

제 목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지원청 ②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2021. 5. 31. 주식회사 [내]☎(X)(와)과 “☎☎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의 계약(계약금액 26,689천원)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2021. 7. 23. 완료하는 등 6건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sup>21)</sup>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로 정의되어 있어 폐교 등으로 미사용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은 【별표】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고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금액 26,689천원, 용역기간 2021. 6. 4. ~ 2021. 7. 23.)” 등 2건<sup>22)</sup>의 정밀안전진단을 2021. 5.부터 2022. 2.까지 실시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지 않아 내진성능평가 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해당 교육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하지 않아 취약 시설의 확인 및 조치 등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는 시·도교육청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 방법과 시기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부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22) 금회 감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한 시설은 6건이나 나머지 4건은 폐교 등 미사용 시설물로 관련 법령에 적용받지 않아 본안에서는 제외하였음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가 제외되거나 결과보고서의 교육부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
- ② ㉞㉟교육지원청과 ㉟㉞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충청남도교육청 □□과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고 (기관주의)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명세 별첨】

<별도조치>

(교육시설과(교육시설안전팀) 통보)

【별첨】

관련자 명세

□ “주의” 처분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근무기간	비고
1	㉞㉟교육지원청	-	Y	2020. 1. 1. ~ 현재	▪ ㉞㉟고 나르정밀안전진단 업무 소홀
2	㉟㉠교육지원청	-	-	2021. 1. 1. ~ 2022. 6. 30.	▪ ㉞㉟초 나르정밀안전진단 업무 소홀 ▪ (현소속) ㉟㉠교육지원청

**【별표】**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청	용역명	준공연도	연면적 (㎡)	계약일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계약자 (대표명)	내진 성능 평가	교육부 결과 보고	상태
1	㉞㉟	㉞㉟고 ㉞㉟정밀안전진단 용역	1977	25,189	'21.5.31.	'21.6.4.	'21.7.23.	26,689	㉞㉟ (X)	미포함	미제출	'22년 철거
2	㉟㉞	㉟㉞초등학교 ㉞㉟정밀안전진단 용역	1973	1,906	'21.12.16.	'21.12.16.	'22.2.4.	19,563	- (-)	미포함	미제출	'24년 철거 예정

# 교 육 부

## 기관주의(2)·기관경고·<별도조치>통보

제 목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 미준수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고등학교 등 17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각 대학의 다양한 지원 자격이나 선발방법에 맞는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라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국공·사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해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장은 개별 대학이 요구하는 추천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대학 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업무 진행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간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교감 및 행정실장 대상 예방감사 연수, 중등 학교장 대상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였다.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없이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없이 총 915명의 학생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업무 담당자 대상 안내 및 연수,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 강화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고등학교가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기관주의)
- ② 감사에 지적된 1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 <별도조치>

(인재선발제도과 통보)

**【별첨】**

관련기관 명세

연번	기관명	처분	비고
1	☐☐고	기관경고	3년 연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없이 추천
2	-	기관경고	
3	-	기관경고	
4	-	기관경고	
5	-	기관경고	
6	-	기관경고	
7	-	기관경고	
8	-	기관경고	
9	-	기관경고	
10	-	기관경고	
11	-	기관주의	1~2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없이 추천
12	-	기관주의	
13	-	기관주의	
14	-	기관주의	
15	-	기관주의	
16	-	기관주의	
17	-	기관주의	

**【별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없이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현황**

순	학교명	연도	추천 학생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비고
1	㉠㉡고	2020	16	x	137명
		2021	51	x	
		2022	70	x	
2	-	2020	7	x	78명
		2021	41	x	
		2022	30	x	
3	-	2020	15	x	32명
		2021	17	x	
4	-	2020	2	x	19명
		2021	11	x	
		2022	6	x	
5	-	2020	11	x	47명
		2021	17	x	
		2022	19	x	
6	-	2022	98	x	98명
7	-	2020	4	x	20명
		2021	8	x	
		2022	8	x	
8	-	2021	35	x	62명
		2022	27	x	
9	-	2020	3	x	77명
		2021	29	x	
		2022	45	x	
10	-	2020	5	x	24명
		2022	19	x	
11	-	2020	7	x	77명
		2021	31	x	
		2022	39	x	
12	-	2020	15	x	63명
		2021	27	x	
		2022	21	x	
13	-	2020	8	x	38명
		2021	14	x	
		2022	16	x	
14	-	2020	3	x	3명
15	-	2020	1	x	11명
		2021	7	x	
		2022	3	x	
16	-	2020	12	x	12명
17	-	2021	52	x	117명
		2022	65	x	
계	17개교	총 915명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원 (담당자와 확인 및 검증)

# 교 육 부

## 기관주의·통보

제 목 교육감 표창 규정 미준수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등에 따라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교육청 소속부서·기관 및 관할 학교들은 교육청의 「교육감 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표창 추천 기준에 적합한 소속 교직원을 추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표창규정」 제2조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감 표창 운영 계획」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으로 교육감 표창 이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감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표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부서·기관 및 관할 학교들은 이중표창이나 재표창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해야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감 표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되거나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교직원에게 이중으로 표창이 수여되거나 재표창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표창 및 이중 표창 해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표】** “교육감 표창 재표창 및 이중표창 현황”과 같이 42명의 교원과 12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표창 되거나, 교육감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재표창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표창 추천 대상자의 검증을 강화하고, 연수 및 안내를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은

- ① 담당부서(☐☐과, ☐과)로 하여금 소속부서·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시고 **(기관주의)**
- ② 표창 대상자 검증 강화 등 관련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교육감 표창 재표창 및 이중표창 현황**

순	학교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상연월일	표창명 (공적)	비고
1	ⓂⓂ초	-	Z	-	2020-12-31	2020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재표창
	ⓂⓂ초	-	-	-	2020-12-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우수 교원 표창	
2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3	-	-	-	-	2022-12-31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유공 교육감 표창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독서교육 활성화 유공 교사 표창	
4	-	-	-	-	2020-12-31	2020년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5	-	-	-	-	2020-12-15	2020년 환경교육 유공	재표창
	-	-	-	-	2021-05-15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6	-	-	-	-	2022-04-25	2021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평가 유공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7	-	-	-	-	2021-05-15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31	2021년 영어로 미래로 영어 수업 운영 유공	
8	-	-	-	-	2021-12-31	학교내 일제잔재 청산 유공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9	-	-	-	-	2022-12-31	2022년 교육활동 보호 유공교원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유공 교육감 표창	
10	-	-	-	-	2021-12-31	2021년 독서교육 활성화 유공	재표창
	-	-	-	-	2021-12-31	2021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유공	
11	-	-	-	-	2020-04-20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 교육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12	-	-	-	-	2020-12-31	2020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재표창
	-	-	-	-	2020-12-31	2020 학교예술교육 유공자 표창	
13	-	-	-	-	2021-05-15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5	2021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공	
14	-	-	-	-	2021-12-31	2021 수업 개선 유공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15	-	-	-	-	2020-12-31	2021 꿈키움멘토링 운영 유공	재표창
	-	-	-	-	2021-12-31	2021Wee프로젝트유공	
16	-	-	-	-	2020-12-31	2020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17	-	-	-	-	2020-12-17	2020 직업계고 원격교육수업자료 제작지원 유공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5	2021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유공 교원 표창	
18	-	-	-	-	2022-12-31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유공 교육감 표창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인성교육 활성화 유공	
19	-	-	-	-	2020-12-31	2020 영재교육 진흥 유공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20	-	-	-	-	2020-12-31	수업혁신 유공 교원	재표창
	-	-	-	-	2021-05-15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21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22	-	-	-	-	2021-05-15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2-12-31	세계시민교육 확산 유공	
23	-	-	-	-	2020-12-31	2021 꿈키움멘토링 운영 유공	재표창
	-	-	-	-	2020-12-31	2021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유공	
24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순	학교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상연월일	표창명 (공적)	비고
25	-	-	-	-	2020-12-31	2020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재표창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26	-	-	-	-	2020-12-31	2020 인문소양교육활성화 유공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27	-	-	-	-	2021-11-12	2021년 학생건강증진(학교보건)분야 교육감 교직원 표창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28	-	-	-	-	2022-12-31	2022 누리봄 교실 운영 유공	재표창
	-	-	-	-	2022-12-31	2022 Wee 프로젝트 운영 유공	
29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0-12-31	2020 상상이룸교육 유공 교원	
30	-	-	-	-	2022-12-31	2022 누리봄 교실 운영 유공	재표창
	-	-	-	-	2022-12-31	2022 Wee 프로젝트 운영 유공	
31	-	-	-	-	2021-12-31	2021년 학교예술교육 유공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32	-	-	-	-	2020-12-31	2020 중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공교원	재표창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33	-	-	-	-	2021-11-12	2021년 학생건강증진(학교보건)분야 교육감 교직원 표창	재표창
	-	-	-	-	2021-12-31	2021년 학부모정책 유공	
34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0-12-31	2020 올해의 영어교사상	
35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0-06-30	2019년도 검정고시, 2020학년도 초·중등 입학시험 시험장 학교 교직원 및 관리위원 유공자 교육감 표창	
36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2-12-31	2022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유공	
37	-	-	-	-	2022-05-15	제41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재표창
	-	-	-	-	2022-12-31	2022 올해의 영어교사	
38	-	-	-	-	2022-12-31	2022년 환경교육 유공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학교예술교육 유공	
39	-	-	-	-	2022-12-31	2022년 영재교육 유공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유공 교육감 표창	
40	-	-	-	-	2021-12-11	2021년 학교환경교육 유공	재표창
	-	-	-	-	2021-12-31	2021년 학부모정책 유공	
41	-	-	-	-	2020-04-20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 교육감 표창	재표창
	-	-	-	-	2020-05-15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42	-	-	-	-	2021-05-1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유공 교육감 표창	재표창
	-	-	-	-	2022-12-22	2022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유공 표창	
43	-	-	-	-	2020-02-10	2019년 충남교육 모니터단 활동	이중표창
	-	-	-	-	2021-02-04	2020년 충남교육 모니터단 활동	
	-	-	-	-	2022-03-31	2021년 충남교육 모니터단 활동	
44	-	-	-	-	2022-12-31	22년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 유공	재표창
	-	-	-	-	2023-02-15	2022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우수직원 표창	
45	-	-	-	-	2022-11-14	2022 하반기 충남교육발전 및 노사관계 구축 우수 공무원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하반기 우수직원 교육감 표창	
46	-	-	-	-	2022-12-26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표창
	-	-	-	-	2022-12-31	2022년 하반기 우수직원 교육감 표창	
47	-	-	-	-	2022-12-30	2022년 홍보유공(충남에듀잇슈) 교육감 표창	재표창

순	학교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상연월일	표창명 (공적)	비고
	-	-	-	-	2023-02-15	2022년 자체감사 결과 우수직원 표창	
48	-	-	-	-	2021-12-31	2021년 성과관리(평가) 유공	대표창
	-	-	-	-	2022-09-29	2022년 을지연습 유공	
49	-	-	-	-	2022-12-31	2022년 하반기 우수직원 교육감 표창	대표창
	-	-	-	-	2023-02-15	2022년 자체감사 결과 우수직원 표창	
50	-	-	-	-	2020-02-10	2019년 충남교육 모니터단 활동	이중표창
	-	-	-	-	2021-02-04	2020년 충남교육 모니터단 활동	
51	-	-	-	-	2021-10-28	2021 나눔실천 유공	대표창
	-	-	-	-	2022-09-29	2022년 을지연습 유공	
52	-	-	-	-	2022-01-17	2021년도 기관(학교) 청렴도 향상 유공자 교육감 표창	대표창
	-	-	-	-	2022-09-29	2022년 을지연습 유공	
53	-	-	-	-	2021-06-30	2021년도 상반기 우수직원	대표창
	-	-	-	-	2022-09-29	2022년 을지연습 유공	
54	-	-	-	-	2022-12-06	2022 하반기 충남교육발전 및 노사관계 구축 우수 공무원	대표창
	-	-	-	-	2023-02-15	2022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우수직원 표창	
계	총 54명 (교원 42명, 지방직 공무원 12명) : 이중표창 2명, 대표창 52명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과, □□과 제출자료를 추출하여 담당과와 재확인 및 검증

# 교 육 부

## 기관경고

제 목 수학여행 안전요원 성범죄 등 경력 조회 미 실시

소 관 기 관 ① 충청남도교육청 ② ㉠㉡중학교 등 7개교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 1. 업무개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항에 따르면,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 3의 5항에 따르면,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안전요원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유·초·중·고(특)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대표되는 수학여행을 실시할 때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안전요원의 경우,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장은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을 채용 전에 실시하여 안전한 수학여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숙박형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 중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안전요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9]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및 성범죄 등 조회 현황”과 같이 총 7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위탁업체를 통해 배치한 총 30명의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9]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및 성범죄 등 조회 현황

순	연도	학교명	유형	학교장	대상(인원)	규모	안전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배치인원	안전요원 성범죄 등 조회유무	비고(위탁업체명)
1	2022	㉠㉡중	사립	AA	2,3학년(207명)	대	0	4	X	대갠
2	2022	㉢㉣중	사립	-	2학년(174명)	대	0	4	X	대갠
3	2022	㉤㉥중	사립	-	2학년(135명)	중	0	2	X	대갠
4	2022	㉦㉧고	사립	-	2학년(123명)	중	0	3	X	대대
5	2022	㉨㉩중	공립	-	3학년(185명)	대	0	4	X	대대
6	2022	㉪㉫중	공립	-	3학년(194명)	대	0	6	X	대래
7	2022	㉬㉭고	사립	-	2학년(167명)	대	0	7	X	대매
계	7개 학교							30명		

※ 규모 : 소 (100명 미만), 중 (100명 이상 150명 미만), 대(150명 이상)

※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과가 취합하여 재검증

###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부 학교에서 업무인수인계 누락 및 담당자의 업무 숙지 부족이 원인으로 동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성범죄 등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교육감은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성범죄 등 경력 조회를 미 실시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b>【인사·복무, 사학법인운영】</b>		
1.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법원 2019년 9월 10. 소취하가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미 실시</b></li> <li>【지방재정법」 제3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민사소송법」 제11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실시 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b>【예산·회계】</b>		
2.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교육지원청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2008년 및 2014년 공사채권압류금 2건의 보관금 합계 37,588천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미편입</li> <li>【「지방재정법」 제82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7조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정</b></li> <li>-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인 2008년 공사채권 압류금 등 2건의 보관금 합계 37,588천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하기 바람</li> </ul>
<b>【교육복지·보건·급식·평생교육 분야】</b>		
3.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쇼핑몰 포인트 적립액 사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치원은 2020. 3.부터 2023. 2.까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290,961원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개인적 물품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과 혼용 사용</li> <li>【「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22~'23 사립유치원회계 기본지침(충남교육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개별관리하고 유치원 회계 재원으로 활용 바람</li> </ul>
4.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 미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등 18개교는 2022. 6.부터 2022. 12.까지 교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18건의 골절사고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미통보</li> <li>【「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통보 의무를 산하 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 하고, 중대사고 통보 절차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법령 위반이</li> </ul>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㉞㉟초등학교 등 12개교의 학교설립 예정지 확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짧게는 87일에서 길게는 2,391일까지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고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b>【시설전반】</b>		
6. 시설분야 계약 심사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의 심사부서는 □㉞과로 되어 있음에도 시설 공사·용역 분야는 발주부서인 □㉟과에서 계약심사 진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계약심사 제도 운영 취지에 맞도록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7. 교육시설 실행 계획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는 '22년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계획 이행결과를 '23.3.31.까지 제출해야 하나, '23.4.12. 기준 전체 912개교 중 3개교 (0.3%)만 제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li> </ul>
8. 설계변경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기준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14건 공사의 안전관리비 42,651천원 미증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보</b></li> <li>-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람</li> </ul>